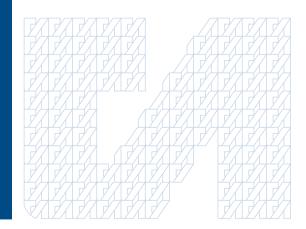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한상헌





ISBN 979-11-6075-180-2 93350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한 상 헌



연구책임	• 한상헌 /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지원	• 이찬우 / 충남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
	• 김지완 / 홍익대 자율전공학부 재학

#### 정책연구 2020-36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발행인 박 재 묵 발행일 2020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http://www.dsi.re.kr

인 쇄 지그래픽 TEL. 042-256-5055 / FAX. 042-625-6882

ISBN 979-11-6075-180-2 9335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과 정책건의

#### ■ 서론

####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사회적 다양성이 증대하는 대전광역시에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민주 주의의 가치가 요구됨
- O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과 흐름을 살펴보고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당위성을 설명함
- O 타지역의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과 실태를 통해 대전의 문화다양성 사업과 정책을 필요성을 강조함

#### □ 연구의 방법과 내용

- O 이론적 연구 및 문헌 조사
- 학술적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분석함
- 문화다양성 개념의 역사와 세계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핌
- 사례조사
-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제정 이후 각 국내의 문화다양 성 정책 흐름과 현황
- 영미권과 유럽, 일본 등 동서양의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 사례를 검토함
- 대전 지역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을 연도별, 유형별로 정리하고 문제점에 대해 분석함
- O 전문가 자문
- 문화다양성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수 회 개최
- 대전의 문화다양성 정책 여건과 실태. 정책의 방향 모색

#### ■ 연구결과

#### 1.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 □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의 담론 형성과 발전

-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담론의 촉발과 전개 과정
- 국제사회 문화다양성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인종·젠더·장애 등 에 대한 성찰의 차원에서 이루어짐
- 유네스코(UNESCO)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5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1992년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시행함
- O 문화 산업화와 문화 다양성
-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와 유네스코 정책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부상함
-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으로 선진국 문화의 유통을 제한함
- 국제사회의 선언과 협약들은 특정 국가 또는 자본에 의한 문화적 잠식으로부 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개념의 활용 사례라 할 수 있음
- 국내 문화다양성의 시작은 문화시장개방과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주의로 인해 전개됨
- 이후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으로 인해 문화다양성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에서 문화다양성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됨

## □ 문화다양성의 기원과 발전을 통해서 본 문화다양성의 개념

O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의 발전 동력과 관련해 주목되게 됨

- 밀의 다양성 개념이 다분히 개인 간 차이와 개인의 독창성을 중심에 놓았다 면, 헤르더(J. Herder)는 집단 문화의 차원에서 다양성과 관련된 논의를 전 개함
- O 문화다양성은 근대 민족국가의 부상 및 제국주의의 발호와 관련되어 인간사회의 많은 다양성 중에서 문화다양성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됨(임현묵, 2012)
- 유네스코는 2007년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이슈: 검토 및 전략, 1946-2007』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다섯 단계를 제시
- 문화와 지식의 단계 : 문화는 예술 작품과 그 생산 과정으로 이해될 뿐 사고 양식, 감정, 인지 양식,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함
- 문화와 정치의 단계 : 국제사회에서 당사국의 독립성, 고유성을 드러내기 위한 문화정체성 개념이 강조됨
- 문화와 발전의 단계: 문화 개념을 예술과 문학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활양식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포함하여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설명해주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체 전체로 정의(문화체육관광부, 2016)
- 문화와 민주주의의 단계 : 국가, 국내의 문화적 관계에 관심을 두고, 국가들 이 문화적 열망과 토대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기 시작
- 문화와 전지구화 단계 : 문화 이슈가 국내,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의제에 포함 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문화 간 대화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
-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아직 명확한 철학적·정치학적 ·법적 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문화다양성 : 민족, 종족, 인종 등 집단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의미함
- 가치다양성 : 집단 간 및 집단 내부의 개인 사이의 가치관 차이를 의미함

#### 2. 문화다양성 담론과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실태

#### □ 문화다양성 정책 담론의 촉발과 확대

- 국내에서 스크린쿼터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이 계기가 됨
- O 2017년 한국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하면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O 차별금지법의 전개와 근황 (2007~2017)
- 차별금지법은 문화다양성의 대표적 가치를 담고 있는 법제로 분기별로 입법을 시도했으나, 아직도 상정이 되지 않는 실정임
- 보수·기독교 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존재 등을 이유로 반 대됨
- O 국내의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문화정책 법안 : 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 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O 문화다양성 관련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특·광역시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광역도 :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 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특별자치도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기초지자체 : 전남 목포시, 전북 익산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남 신안군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 문화다양성 관련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

#### □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 O 다문화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인천광역시, 2017)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 운영 (광주광역시, 2017)

- O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
-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서울특별시, 2017)
- 청춘극장 운영 (서울특별시, 2017)
- O 세대 맞춤형 사업
- 청년문화 집중 지원 (부산광역시, 2016)
- 빛고을 어르신 한마당축제 (광주광역시, 2016)
- O 인권 감수성 증진 사업
- 디아스포라영화제 (인천광역시, 2017)
- 미얀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광주광역시, 2016)

#### □ 해외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

- 영미권, 유럽의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김규원, 2015)
- 캐나다 퀘벡 주 정부의 문화정책 : 퀘벡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술적 창조력을 자극하며, 문화적 삶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덴마크의 문화예술 관련 공공지원정책 : 덴마크에서 시각 예술, 음악, 연극, 영화, 도서관, 예술교육, 기본소양교육, 기록물, 박물관, 동물원, 문화 환경, 스포츠, 방송, 저작권 등의 분야는 문화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시행은 전부 혹은 일부 공공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O 일본의 문화다양성 제도와 정책
- 문화예술기본법 (文化芸術基本法, 2001) : 문화 예술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자(단체)의 자주적 활동의 촉진을 내용으로 하여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풍부한 국민 생활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아이누 문화진흥 (アイヌ文化の振興, 2019): 아이누 민족 문화재단이 실시하는 아이누에 관한 연구조성, 아이누어의 진흥, 아이누 문화의 전승 재생이나문화 교류, 보급 사업, 뛰어난 아이누 전통문화에 대한 재생사업을 지원

#### 3.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검토

#### □ 대전의 문화다양성이 적합한 사회적 여건

- O 대전은 외국인 비율이 높음
- 외국인 주민수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등)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주민 수는 유성구, 동구, 서구 순으로 많으며, 외국계 주민 자녀 수는 서구, 동구 순으로 많음
- 따라서 지역구에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수의 구성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 책과 지원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을 특화하기에 적합한 포용도시로서의 대전
- 대전에 30년 이상 거주자는 약 50%도 되지 않으며, 20년 미만 거주자는 약 30% 조금 넘은 응답률을 보임
- 이는 대전에 토박이가 적으며,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대전의 인구사회학적 환경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샐러드볼(Salad Bowl)'로서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대전의 문화다양성이 적합한 사회적 여건

- O 대전의 성평등 기본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의 전개과정과 좌절
- 성평등 기본 조례 : 2015년 7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했으나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 단체로부터의 반발에 따라 성평등조례 개정 및 조항삭제
- 학생인권 조례 : 2016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이루어져 왔지만 교권약화, 학생들의 일탈, 성소수자로 문제로 인해 반발세력에 의해 철회됨
- O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조례
- 조성칠 의원 외 13인이「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을 제출, 상임위 통과

- 동성애 옹호, 과격 이슬람 등에 문호를 열 수 있다는 보수·기독교계에서 반 대로 인해 상정되지 못함
- 문화다양성 쟁점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외부의 관심
- 지역언론 : 지역언론 문화다양성에 대해 폭넓은 관심이나 심도 있는 분석을 찾아보기 어려움
- 문화다양성을 강조하는 입장 :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을 제기, 담론이 오고 가 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한 사례를 찾기는 어려움
- 문화다양성을 반대하는 입장 : 문화다양성 관련 제도와 정책을 반대하는 논 거로 특정 종교, 성적 태도에 대한 배타적 혐오가 주된 입장

#### □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실태와 현황, 분석

- 2015년~201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하위범주, 정책대상, 추진방식, 정책목적 등으로 분류함
- O 2015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 가치 확산 유형 사업 2건, 소수문화의 영향력 증대 사업 5건, 각 1건의 조사 연구, 교육 유형의 사업이 추진됨
- 2015년 대전은 다른 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 인 정책을 펼쳤음
- O 2016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 총 38개의 사업이 추진됐으며,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7개, '인식개 선 및 가치확산 사업', '정책 추진체계 구축사업', '국제 문화교류사업'은 각 4개, '정책개발 사업'은 3개가 추진됨
-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나 참여기회 는 활발하지만, 대전 지역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사업은 미진함
- O 2017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 총 56개의 사업이 추진됐으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19 개,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9개,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2 개, '국제 문화교류사업', '국제문화교류'는 각 1개씩 추진됨

-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과 어울리는 자리나 프로그램 마련보다 특정 대상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의 성격이 강함
- O 2018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 총 64개의 사업이 추진됐으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17 개,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11개,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국제 문화교류사업', '국제문화교류'는 각 2개씩 추진됨
-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다문화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아이부터 노인까지 세대공감을 하고 세대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부 재함
- O 대전광역시 종합적 특성
- 다양성 정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하위범주로서 다문 화의 비중이 높음
- 정책대상으로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추진방식 으로는 교육과 체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정책목적으로는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이 가장 높고, 이어서 문화기본권신장 의 비중이 높음

#### 4.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정책 방향과 전략사업제안

#### □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대전시 정책 기조

- O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
- 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낮으며 문화다양성 개념의 혼란과 피상적 에 따른 정책 추진의 혼선
- 문화다양성과 차별금지법,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 O 정책의 기본반향
  - 정책 추진 주체의 전문성 강화하며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다양성 교육사업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
- O 선결과제
- 이전의 보수·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인해 상정되지 못한 대전광역시 문화다양 성 조례안 재발의를 하고자 함
- 문화다양성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 언어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개념을 풀어나감
- 대전광역시가 주체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을 주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청 구할 수 있게 하는 상향식 방식의 사업이 확대 도입시킴

#### □ 전략 사업 제안

-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
- 지역학교과 평생학습시스템을 연계한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 온라인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학습 모임 지원, 문화다양성 특화 예술 창작 지원,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다각적 홍보를 진행함
- O 문화다양성 기반구축을 위한 공간 활용
- 문화다양성 거점 공간인 문화의 집, 민간 문화 활동 시설연계, 유흥공간 활용
- 문화다양성 커뮤니케이터와 같은 문화다양성에 전문적인 지식인을 발굴하고 양성함
- 문화다양성 협력네트워크를 활용, 문화다양성 정책 연구 개발
- O 문화다양성에 특화된 행사들을 개최
- 문화다양성주간 개최하여 문화다양성을 통해 연대 간 사회 참여의식을 제고 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주간'을 선포하고 '문화다양성'의 목적을 대전 전역에 확산하는 기획 행사 필요
- 대전은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전문 인력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을 주체로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다문화 이해 축제 추진
-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여행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특화 지구를 조성하여 '문화다양성 학습지구(Education Zone)', '문화교환시장(Cultural Exchange Zone)'으로 구축
- O 대안적 독립문화 활성화로 문화다양성 특화
- 독립영화 전용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 팬덤, 마니아 문화를 대전의 도시 특성으로 부각해 특화

##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방법과 절차	5
3. 문화다양성에 관한 선행 연구	8
제2장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1. 문화다양성 담론의 형성과 발전	15
2. 문화다양성의 개념	18
제3장 문화다양성의 정책 현황	27
1. 문화다양성 정책 담론의 촉발과 확대	29
2.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현황과 사례	35
제4장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검토	53
1.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대전광역시의 사회적 여건	55
2. 문화다양성의 쟁점화 과정과 지역사회 의견	60
3. 대전지역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제5장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	81
1.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대전시 정책 기조	83
2. 전략 사업 제안	
참고문헌	107
부록 : 문화다양성 관련 법규	113

## 표 차례

표	1-1.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실태조사 9
표	1-2.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10
표	2-1.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협약과 법률22
표	3-1.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1~3차31
표	3-2.	문화다양성 관련 특·광역시 조례36
丑	3-3.	문화다양성 관련 광역도 조례37
丑	3-4.	문화다양성 관련 기초지자체 조례38
丑	3-5.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청 조례38
표	3-6.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 추이39
표	3-7.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41
丑	4-1.	대전광역시 외국인 주민 수56
丑	4-2.	2019년 대전광역시 지역별, 성별 거주 지역57
표	4-3.	대전 거주기간58
표	4-5.	2015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72
표	4-6.	2016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73
표	4-7.	2017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74
표	4-8.	2018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75
丑	4-9.	대전시 소재 다문화 지원 시설 및 연구기관

## 그림 차례

그림 3-1.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42
그림 3-2.	청춘극장 운영	43
그림 3-3.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43
그림 3-4.	부산시에서 주최한 청년 대상 공모전	44
그림 3-5.	광주 빛고을 어르신 한마당축제	45
그림 3-6.	2017년 인천 디아스포라 영화제 포스터	45
그림 3-7.	미얀마 88항쟁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46
그림 3-8.	2020년 아이누국립박물관 개관 행사	52
그림 3-9.	2019년 아이누 신법(新法)제정	52
그림 4-1.	'노잼도시 대전'라는 프레임을 역이용한 관광공모전 개최	59
그림 4-2.	대전지역 일간지의 문화다양성 보도량(1990~2020 상반기)	65
그림 4-3.	중앙 일간지의 문화다양성 관련 보도에 대한 키워드 분석	67
그림 4-4.	대전지역 일간지의 문화다양성 관련 보도에 대한 키워드 분석	67
그림 4-5.	중앙 일간지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68
그림 4-6.	대전지역 일간지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68
그림 4-7.	연도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의 변화	71
그림 4-8.	정책기관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사업	76
그림 4-9.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사업의 정책대상별 분포	77
그림 4-10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사업의 추진방식별 분포	77
그림 4-1	1.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사업의 정책목적별 분포	78
그림 4-12	2. 광역시별 문화다양성 사업의 주제별 분포	78
그림 5-1.	서래로의 프랑스 국기 상징 보도블록	103
그림 5-2.	한민시장 다문화 음식특화거리 전경	104
그림 5-3.	2019년 다문화 화합한마당 포스터	104

DSI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방법과 절차
- 3. 문화다양성에 관한 선행 연구

1장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1) 대전광역시 인구구성의 다원화로 인한 사회적 다양성 증대

- 최근 중앙정부와 몇몇 광역단체에서도 이러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비해 대전시의 경우 구체적 정책 추진은 미흡한 편임
- O 이에 대전시에서도 문화다양성의 취지와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문화현상들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모색하는 기초연구가 필요
-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원화에 따른 문화다양성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 (2) 사회적 갈등 치유와 문화민주주의의 가치 실현 필요

-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채택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제도적 요구가 지방정부에까지 포괄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흔히 문화다양성이라 하면 주로 이주민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사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유네스코 협약에서 나타나듯 문화다양성은 지방분권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소수자집단의 특성을 존중하 는 문화민주주의와 기밀히 맞닿는 중요한 가치임

## 2) 연구의 목적

#### (1) 문화다양성의 이념적·정책적 중요성 제기

- O 문화정책의 토대가 되는 가치로서 '문화다양성'의 이념적 중요성을 사상사적 관점에서 파악
- 중앙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가치와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을 모색

## (2) 대전 사회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제안

- O 대전지역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진단
- 문화다양성의 자원을 발굴하고, 가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지역민 화합을 위한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

## 2. 연구방법과 절차

## 1) 연구의 방법

#### (1) 이론적 연구 및 문헌 조사

- O 학술적 논문과 정책연구에서 정의한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문화정책적 가치에 관하여 살핌
- 문화다양성 개념이 도래한 역사적 단계와 이념적 확장 과정, 세계 사회에 미 친 영향을 살핌
- O 문화다양성의 다양한 표현과 관련 용어를 간략히 정리

#### (2) 사례조사(대전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현황 포함)

-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흐름과 현황 :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제정 이후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검토
-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조사나 정책연구 현황도 조사 검토
- O 국외 문화다양성 관련 사례 :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집중 검 토함
- 일본은 전통문화의 전승과 문화재 보존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 누족(홋카이도 선주민)·류큐인(오키나와 원주민)과 같은 소수민족의 문화가 공 존하는 등 이를 아우르기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음
- 또한 동일한 동아시아권의 국가이자 유교문화권의 정서가 공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었음
- O 대전 지역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하여 연도별, 정책추진 기관별 현황을 검토 하였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내용에 따라 유형별로 현황을 검토 정리

#### (3) 전문가 자문

- 문화다양성 전문가, 인권문제 활동가, 대안적 독립문화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형식의 자문회의를 수 회 개최
- O 대전의 문화다양성 정책 여건과 실태, 향후 대전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 에 관한 의견과 정책 사업 수요를 수렴

## 2) 주요연구 내용

####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특징
- O 문화다양성 구현의 중요성,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가치 탐구
- O 2019년 제정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니는 함의

#### (2) 문화다양성 정책의 구체적 실천과 사업 현황 검토

- 무지개다리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 광역지자체를 비롯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기추진된 사업의 비교 검토
-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대전시가 추진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흐름과 특징 검토 부석
- O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전 지역사회의 여론 검토

#### (3)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확산을 정책 기조와 방향

- O 대전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조 설정
- O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제약 요소와 추진 방향 설정

#### (4) 대전시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전략과제 제안

- O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사업별 보완 방안 제안
- O 대전시의 도시체질을 강화할 문화다양성 사업 발굴 제안
- 독립서점, 마을박물관, 마을미디어 등 문화공동체의 확산에 기여하는 문화 현 상들에 대한 문화다양성 관점의 정책 지원 방안 모색

## 3. 문화다양성에 관한 선행 연구

### 1) 선행연구의 흐름

※ 문화다양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다 양성에 관한 정책연구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5년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대응방안 연구〉부터 현재까지 10여 건의 관련 연구를 발표하였는데,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적 트렌드에 대응하는 전략적 차 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O 2015년에는 〈국외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연구〉 발표
- O 2017년에는 국내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발표
- O 2019년 발표된〈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2012년부터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과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 확립 노력에 대한분석을 통해 적실성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제안하려함

## 2) 주요 갈래

#### (1) 문화다양성에 관한 최근 10년간 대표적인 국내 학술 연구

- 김용섭(2017): 문화다양성협약의 채택의 전개과정과 국제적 동향을 정리하고 문화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고찰하면서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예외, 다문화 주의와 문화다양성과의 관계를 살펴봄
- 심규선(2018): 신뢰와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내외국인 간 접촉 경험이 사회통합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함
- O 박선희(2013): 2005년도 문화다양성 협약의 특성을 고찰하며 본 협약이 채택된 지 10년 동안 협약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연구
- 목혜린(2019) : 초기의 다양성 확산 정책을 거쳐 보편적 가치로서의 다양성
- 8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을 이행을 위한 정책의 점검 및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술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이행 현황과 방안을 분석

#### (2)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정책계획, 보고서

#### O 실태조사

- 지자체별로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연구원, 수원시, 고양시, 김해시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국가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

수행주체	수행년도	제목
부산광역시	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고양시정연구원	2018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광주광역시	2016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김해시	2019	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수원시	2018	수원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인천연구원	2018	인천문화다양성 자원과 활용방안

표 1-1.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실태조사

#### O 연구보고서

-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연구보고서를 작성
- 공공기관과 연구기관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법제 연구원이 연구보고서를 작성
- 인천발전연구원(2017),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경우 지표조사로서 연구보고 서를 작성
- 문화체육관광부(2019)는 문화다양성의 백서를 연구보고서로 작성

### 표 1-2.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

수행주체	수행년도	제목	비고
경기연구원	2017	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	
서울연구원	2017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연구	지표조사
강원연구원	2018	강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지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다양성 주간백서	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위원국 역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2019	2017년 무지개다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일반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시범연수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201 7/2019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 제 개선 연구	

## 3) 본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 (1) 실효성을 목적으로 한 정책 연구

-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연구 : 문화다양성과 같은 연구는 모두 전국적 단위에서 문화다양성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큼
- 본 연구에서는 대전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체질을 단단히 하고 시민공동체를 강화하는 중요한 특화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클 것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로 출발
- O 문화정책의 효과를 모색하는 연구
- 이처럼 철저히 지방분권과 지역특화의 관점에서 대전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선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하는 실효적 연구라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님

#### (2) 문화다양성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연구

- O 다문화 중심을 넘어 포용과 인권의 가치까지 포괄하는 문화다양성 연구,
- 본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이 강한 대전시의 도시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해 볼 때 대전시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연구는 더욱 필요함.

## (3) 기대효과

- O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설정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O 또한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통해 대전시 문화예술 정책의 포용성과 개방 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O 아울러 문화다양성 관련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현재까지 수행된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설정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DSI

#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 1. 문화다양성 담론의 형성과 발전
- 2. 문화다양성의 개념

2장

## 1. 문화다양성 담론의 형성과 발전

## 1)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담론의 촉발과 전개

####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차원에서 다양성에 대한 고려

- 국제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전쟁과정에서 합리성이라는 명목 하에 민족·인종·젠더·장애등의 차이들이 억압되고 극단적으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 학살이 발생했으며, 다양성에 대한 고민은 이에 대한 성찰과 연계되어 있음
- O 이러한 성찰은 인권의 차원에서 차이에 의한 억압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양성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임
- 유네스코(UNESCO)는 1948년 다양성 향유를 인간 권리의 핵심적 요소로 규정하는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1965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1992년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진행됨

## (2) 문화의 산업화와 문화다양성

- O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인 의제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와 유네스코의 정책을 통해서임
-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유 네스코는 문화다양성 개념을 핵심으로 각국의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체결된 '문화적 표 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은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음
- O 즉 특정 국가 또는 자본에 의한 문화적 잠식으로부터 각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로 문화다양성 개념은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 국내에서 본격화된 문화다양성 논의

#### (1) 문화시장개방의 저항 논리로서 문화다양성

○ 국내에서 문화다양성 논리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한미무역자유협정(FTA) 과 이 과정에서 영화시장의 스크린쿼터로 대표되는 국내 문화시장을 보호의 목소리가 사회적인 이슈로 확산되었고,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까지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됨

#### (2)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다문화주의

- O 이후 문화다양성 논의는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외국인들의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다문화주의 담론을 통해 본격화되었음
- 결혼이민자의 본격적인 사회 유입으로 인해 2005년부터 다문화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다문화 정책의 수혜자는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결혼이주민 및 노동자로 특정되어 정책이 시행됨

## (3) 유네스코 다양성협약 비준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

- O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 정책적인 과제 : 한국은 비준국은 협약 제9조(정보공유와 투명성)에 의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보고서 형태로 4년마다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김
- 전문 인력 양성의 교육기회 증가 : 2014년에 제1차 국가보고서에도 제시됐 던 '무지개다리 사업'은 이후 사업 수 및 지원 재정수가 꾸준히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활동 증가 : 자발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대
- 16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 (4) 다문화에서 문화다양성으로의 전환

- O 2012년 중앙정부 담당기관인 문체부에서 정책의 포인트를 '다문화'에서 '문 화다양성'으로 바꾸기 시작함
- O 문화다양성을 인종이나 민족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적과 성별, 종교 및 소득, 혼인의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으로 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
- 문화다양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부재 : 다양성 정책이 문화예술 정책이 아 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업화되어 문화정책으로서의 정체성 상실이 우려되 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선 조치가 필요

## 2. 문화다양성의 개념

## 1) 문화다양성 개념의 기원과 발전

#### (1)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시작된 문화다양성 개념

- 인류학자 피터 우드에 따르면, 서구에서 '다양성'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 은 갈등이나 대결을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등장하다가, 19세기 중반 다윈에 의해 긍정적 의미가 부가됨<sup>1)</sup>
- 이후 밀과 헤르더에 의해 다양성 개념은 문화의 발전 동력과 관련해 주목되게 됨. 밀이 설명하는 다양성의 개념이 개인과 개인 간의 차이와 개인의 독창성 중심으로 놓았다면, 헤르더(J. Herder)는 집단의 문화 차원에서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²)
- 다양성은 인간세계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듦으로써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하므로 심미적으로 바람직하고, 상상력과 창의성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독창적인 정신이 등장할 수 있게 하며 상이한 사고방식들의 건강한 경쟁을 고취함으로써 진보를 가능하게 하기에 기능적으로도 바람직(Parekh, 2006; 임현묵, 2012 재인용)
- O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다양성은 대체로 자연의 다양성과 인간사회의 다양 성을 가리키며, 인간사회의 다양성은 다시 개인 간 다양성이 일정한 범위의

<sup>1) 14</sup>세기에 초서(G. Chaucer)는 "두 나라의 법 사이에 그토록 심한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말했고, 16세기 영국의 재판관 브래드쇼(H. Bradshaw)는 "그의 모든 왕국에 다양성이 사라지고, 증오도 잦아들었다"고 기록. 이후 수 세기가 지나 1859년에 출간된 종의 기원 에서 다윈은 생물학적 다양성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wood, 2005).

<sup>2)</sup> 밀(J. S. Mill)은 동양, 특히 중국을 유럽과 대비하면서, 유럽 사회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진보할수 있었던 이유를 유럽의 개인이나 계급, 민족들이 다채로운 삶의 다양성을 개척한 결과라 봄 (Mill1972, 127-30; 밀 2005, 131-5). 헤르더는 각 민족에는 그에 상응하는 그 자신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이러한 각 민족의 문화는 저마다 독특한 특질이 있는 것으로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인간의 잠재력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것으로, 이러한 문화를 판단하는 공통의 기준은 없으며, 따라서 문화 간 우위를 따지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로 간주(벌린, 1997)

지역이나 집단 내부의 상황과 특성을 보여준다면, 집단 간 다양성은 상호 이 질적인 다수의 집단들이 존재하는 상황을 가리킴(이윤정, 2018)

- O 이처럼 근대 민족국가의 부상 및 제국주의의 발호와 관련되어 인간사회의 많은 다양성 중에서 문화다양성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됨(임현문, 2012)
- 이때 문화다양성은 인간 집단이 언어, 관습, 신념, 가치관, 생활양식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현상을 가리킴
- 이렇게 문화다양성에 관련되는 집단은 근대 민족국가와 반식민주의의 맥락에 서는 대개 민족이나 종족 또는 인종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 킴리카는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 단순히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보다 '종족문화 다양성(ethnocultural diversity)'이라는 용어를 사용(Kymlicka, 1995; 임현묵, 재인용)

#### (2) 유네스코에서 파악하는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 단계

-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의 확보가 평화의 구축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의제를 구축해왔으며, 또한 기존의 협 약, 문서, 회의 결과 등을 분석하면서 의제를 발전시켜왔음
- O 2007년 발간된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이슈: 검토 및 전략, 1946-2007』 보고 서에서 스테뉴(Stenou)는 문화 다양성 논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제시(Stenou 2007; 한건수, 2015 재인용)

#### ① 문화와 지식의 단계

- 문화와 문화의 차이는 개별 국민국가 단위로 인식되고, 문화는 예술 작품과 그 생산 과정으로 이해되었으며, 사고양식이나 감정, 인지 양식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함

- ② 문화와 정치의 단계 : 탈식민시기
  - 1950년대부터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이 발표된 1966년까지의 시기
  - 문화는 국가별 정체성의 상징으로 표현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당사자들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드러내는 문화정체성 개념이 강조됨

#### ③ 문화와 발전의 단계

- 1966년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이후부터 1998년 '발전을 위한 문화정 책 스톡홀름 정부간회의'까지의 시기
- 이 시기의 문화 개념은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개념과 연계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됨
- 1982년 '멕시코시티 세계문화정책회의'에서 문화 개념을 예술과 문학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활양식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포함하여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설명해주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체 전체로 정의 (문화체육관광부, 2016)

#### ④ 문화와 민주주의의 단계

- 문화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연계하기 시작한 시기로 1980년대에 시작됨
- 국가 간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문화적 관계에 관심을 두고, 민주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들이 문화적 열망과 토대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기 시작
- 특히 이민자 공동체의 차별과 배제에 대한 문제제기, 원주민의 권리에 대해 이론적·실천적 논의의 필요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과 집단의 상호 공존에 대해 의제를 제기

## ⑤ 문화와 전지구화 단계

- 2000년대 이후 전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반적 전략과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해짐
- 문화의 개념으로서 문화다양성이 지속가능발전, 안보, 평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에 대한 공헌과 연계되어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함

#### 20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 문화 이슈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의제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문화 간 대화가 문화다양성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 과제들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창조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 간 대화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
- 위와 같은 문화다양성 개념의 진화는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문화의 개념이 예술과 문학의 한정적 범위에서 벗어나 사회나 그 사회집 단을 설명해주는 정책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다양성의 개념 또한 확장되었음을 보여줌

## 2) 문화다양성 개념의 모호성과 한계

#### (1) 문화다양성의 법제적 정의와 규정의 한계

O 대체로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추상적인 '문화' 개념 대신 경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화가 표현되는 방식'이란 방식을 채택
-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문화의 제작·배포·유통·향유와 같은 표현방식으로 특정화시킴으로써 이를 통계적이 가능케 한 실용적인 전략3)

<sup>3)</sup>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다양성 논의의 기원이 다른 나라의 문화 상품으로부터 자국의 문화시장을 지키고자 했던 바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음

- O 2014년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이후로 지역에서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관련 조례들은 대체로 해당 법률의 정의를 채택
- 문화다양성 협약은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류의 상당한 진전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아직 명확한 철학적·정 치학적·법적 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
- 문화다양성이란 용어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서 기원하며 또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협약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표 2-1. 국내 문화다양성 관련 협약과 법률

	정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2005)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방식을 말함.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됨.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 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 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 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기 나타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2015)	문화다양성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가 획일화되거나 목적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가치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는 것을 추구하는 정신임

## (2) 개념의 혼란

- O 다양한 표현형으로서의 문화다양성 :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정책
- 문화적 예외 정책은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의 현실을 반 영한 개념이며, 오래전부터 프랑스 문화정책의 근본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성을 지님(2010, 김동준)
- 시청각 문화상품 즉 자국의 영화, 드라마, 시리즈물, 다큐멘터리, 대중음악 등과 같은 부가가치가 큰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함
- 연극인과 같은 예술가 및 무대미술, 음향 등의 기술자를 포함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
- 소자본의 도서출판업자 및 상인들과 같이 거대자본에 취약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계를 보호하기 위함
- O 'diversity'와 'variety'
- 'diversity'와 'variety'라는 두 단어 모두 다양성을 뜻하지만, 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에서 diversity 와 variety의 혼용은 다양성 협약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개념의 차이를 유발함
- '문화적으로 다양하다(variety)'는 것을 문화다양성으로 인식하나 다양성 (diversity)의 개념은 차이가 있음. diversity란 한 사회를 한 뿌리로 보고 한 뿌리 안에서 여러 가지가 나듯 여러 구성원들을 포괄하고 포함하여 함께 공존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variety는 여러 가지 개체를 한데 모아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님(김면, 2019)4)
- O '문화다양성'과 '가치다양성'(임형묵, 2012)
- 문화다양성이 문화적 차이를 의미하는 반면, 가치다양성은 집단 안팎의 개인 간 가치관 차이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됨

<sup>4)</sup> 서윤호(2010)에 따르면 라틴어에서 'diversus'라는 단어의 의미는 본래 대립, 불일치, 모순 등 적 극적이고 동적인 의미에서의 상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극적이고 정적인 의미에서의 다수성과 는 거리가 멀고,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이러한 적극적 의미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차이들의 상호 파괴적이지 않은 공존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됨

- 문화다양성은 민족, 종족, 인종과 관련된 집단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가치다 양성은 집단 간 및 집단 내부의 개인 사이의 가치관 차이를 가리킴
- 가치다양성은 사람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여럿일 수 있고 이들 복수의 가치는 종종 양립할 수 없어 상충되는 현실을 가리킴. 나아가 이런 현실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규범적 정당화를 시도하는 입장을 가치 다원주의 또는 도덕/윤리 다원주의라고 부름(허라금 2003, 47)

## 3) 문화다양성의 정치적 의미

#### (1) 문화다양성의 정치적 성향

- 문화다양성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들로 전달될 수 있는 정치적 개념 으로 간주됨
- O 문화다양성의 이념적 토대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 다원화 현 상, 곧 다양한 인종 문화, 이념, 종교, 민족 등과 같은 문화적 단위들의 공존 현상에 대한 인식론적 입장이나 태도를 말함
- 문화다원주의(culturalpluralism) : 각각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복수의 문화들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선에서 조화롭게 공존, 교류를 의미
- 문화융합(cultural fusion) : 서로 다른 두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제3 의 문화로 탄생을 의미함
- O 문화다양성의 양가성
- 긍정적 측면 : 세계 여러 문화에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와의 공유
- 부정적 측면: 세계화로 인한 문화 간 상호작용과 알력의 접점들이 늘어나면 서 분쟁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특히 종교적 성격의 정체성과 관련된 긴장과 이탈, 권리 주장 등이 대두되는 원인으로 작용

#### 24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 (2) 금지와 권리보호의 근거로서 문화다양성

-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근대국가 체제에서 문화적 으로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현실 때문에 문화다양성은 특별한 정치적 의미 를 지니게 됨
  - 소수집단을 위한 문화적 권리 보장의 정당성, 모든 문화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 문화에 대한 평가의 기준 설정, 문화적 차이의 해결, 국가와 문화의 관계설정,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정치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법 등 (Parekh 2006, 9)
- 차이의 정치의 필요성 : 영(I. Young 2000; 임현묵, 2012 재인용)의 지적처럼 정체성의 정치는 정체성을 본질화하고 집단 내부의 차이를 경시하며 집단간 경계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소수집단의 문화 인정 요구를 옹호하는 관점으로 정의되는 다문화주의 는 소수집단의 문화를 실체화하면서 그 동질성과 구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 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집단 내부의 이질성에 민감해지는 것이 요청됨. 문화 내부의 이질성 과 문화 사이의 역동성과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문화다양성의 정치 를 사고할 필요가 있음

DSI

# 문화다양성의 정책 현황

- 1. 문화다양성 정책 담론의 촉발과 확대
- 2.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현황과 사례

3장

## 1. 문화다양성 정책 담론의 촉발과 확대

## 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사회적 계기

#### (1) '문화적 예외'와 스크린쿼터

- O 문화적 예외 정책은 1993년 프랑스에 의해 GATT에 도입된 개념이며, 문화 상품과 서비스는 일반적인 무역상품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님
-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한 국가의 문화정체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다른 일 반상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미국 영화와 TV 드라마 등으로 대표되는 해외의 문화상품으로부터 자국의 문화시장을 보호하 기 위한 관세율과 쿼터제를 지켜냄
- 한국 역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비롯 2004년 한미 FTA 등에 따른 대중문화의 개방으로 인해 스크린쿼터로 대표되는 국내 시장이 보호 규제의 완화움직임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의 논리로 '문화적 예외'의 논리가 대두되었음
- 스크린쿼터 제도는 자국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국내 영화의 진흥을 위해 1년 에 자국 영화를 일정 비중 이상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임. 국내에서는 1966년 법제화되어 1967년 시행되었으며, 최초 영화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연간 총 상영일 수를 90일로 규정하였음.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1996년에는 146일로 개정된 바 있음
- O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정부는 한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6년 7월 1일 스크린쿼터를 73일 축소하였으며, 한미 FTA 에서는 스크린쿼터가 현행유보로 합의되어 현재 스크린쿼터 73일까지만 인정되고 있음

#### (2)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정책 정비

- O 국내의 다문화정책은 2000년대 중반 국내에서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인 논의 가 전개됨
-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 2004년 국적법개정,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 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 의 및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
- O 정부는 이주민의 체류유형에 따라 정책을 화 함
- 이주 노동자의 경우 해당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책을 실시
-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1차~3차)
-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개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1차(2010~2012년), 2차(2013~2017년), 3차(2018~2022년)
- 이전까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가족 정책이 개별 부서 단위로 추진되었던 것이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통해 국가단위 정책으로 통합
- 탈법적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 가족폭력피해자 보호,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지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됨

표 3-1.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1~3차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 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건강 한 성장을 위한 교육 등 지원 강화	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문화 사회 구현
추진 과제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결혼이민자 정책 지원 및 자 립역량 강화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 장환경 조성	족 구현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 달 지원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 장지원과 역량 강화 -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 용성 제고

## (3)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으로 문화다양성의 정책적 책무 증대

- O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각국의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을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공존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문화교류의 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문화다양성 협약에는 14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대륙별 6개 그룹, 총 2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O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가입
- 2017년 6월 12~15일 우리나라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 본부에서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원 국으로 선출됨

- 문화다양성 협약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와 협의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음
- 우리나라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간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 국으로 활동(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으로 구성)
- 문화다양성 협약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노력과 연 구가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한국이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국가경제규모와 국제영향력에 부합하는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이슈 발굴과 전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와 유엔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기구 내 역할, 집행수단,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사업과 협력방안을 찾고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2) 차별금지법과 문화다양성

- O 차별금지법은 문화다양성의 대표적 가치를 담고 있는 법제로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님
- 기존의 인권담론을 넘어 더 포괄적으로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작용함
- 사회적 소수와 다수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함께 향유하는 문화 공동체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 (1) 차별금지법의 출발 (2007년~2008년)

- O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 금지법을 입법 예고
  - 병력/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성적 지향/학력 7개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짐
- 32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 결국 개신교계의 강력 반발에 재계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에서는 국가인권위 원회의 2006년 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 상제도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 결국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
- O 2008년 1월 노회찬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
- 2008년 17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됨

#### (2) 차별금지법 논쟁의 전개 (2010년~2011년)

- O 2010년 4월경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킴
- 이후 보수·기독교 단체가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발
-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는 입법이 어렵다며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밝힘
- O 2011년 12월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함
- O 2012년 18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됨

## (3)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격화 (2012년~2013년)

- O 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
-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나 계속 계류됨
- 2016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됨 다만
- 권영길이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발의했다는 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발의했다는 점, 발의자 중에서 소관 상임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됨
- O 2013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UN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함
-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어떤 법안도 내놓고 있지 않는 실정임

- O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 의원(현재 국민의당 소속)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됨
-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 등이 반대 운동, 일부 조항에 대해 철회를 요구함<sup>5)</sup>
- 2013년 4월 24일에 철회됨
- O 7월 1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4) 현재(2017년~)

- O 2017년 2월 23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를 제안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포용적 가족정책을 위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촉구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차별금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움
- 정의당은 원내 정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제정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열어 참가함
- 문재인 측에서는 선거 이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존재를 이유로 들며 차 별금지법이 필요 없음을 주장
- O 2018년 2월 특정 자치구역에서 시행되는 조례안 중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시하여 주목을 받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의 의기 투합으로 폐지되기에 이름
- 엄연히 시행 중인 인권조례를 없애버렸다는 점과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만을 문제 삼아 조례 전체를 폐기해버렸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줌

<sup>5)</sup>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sup>34 /</sup>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 2. 국내외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과 사례

## 1)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 (1) 문화다양성과 연관성을 지니는 문화정책 법안

- O 문화기본법 (법률 제15061호)
  -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과 추진을 위한 기본적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여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증진 시켜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 발전에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들기 위해 수립
- O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6594호)
-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시킴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O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제12354호)
- 서울로 편향되어 발전해왔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색 있는 고 유문화를 가꾸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 또는 지역 재생 등의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O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6595호)
-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 창조를 통해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것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O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16053호)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대중문화 확립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O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14630호)

-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1호)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2) 문화다양성 관련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 O 특·광역시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특·광역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을 위한 실행계획과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을 위한 지원이 공통적인 사항임

표 3-2. 문화다양성 관련 특·광역시 조례

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에 관한 조례(2017)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7)	실행계획· 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에 관한 조례(2017)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9)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O 광역도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광역도는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척 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을 위한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을 위한 지원과 교육이 공통적인 사항임

표 3-3. 문화다양성 관련 광역도 조례

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7)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
에 관한 조례(2016)	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
에 관한 조례(2019)	와 증진을 위한 교육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
에 관한 조례(2017)	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
에 관한 조례(2019)	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
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7)	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O 기초지자체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기초지자체는 전남 목포시, 전북 익산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남 신안군이 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을 위한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을 위한 지원과 교육이 공통적인 사항임
- 신안군 조례안의 경우, 조례안을 가진 지역 중 제일 작은 지방자치 단위이지 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남

표 3-4. 문화다양성 관련 기초지자체 조례

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7)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7)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 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2018)	실행계획·실태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문화다양성 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 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 례(2019)	실행계획·실태조사, 섬문화다양성 센터 설치, 섬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섬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섬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을 위한 지원, 국제협력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을 가진 지역 중 제일 작은 지방자치 단위이지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의 특색을 가 장 잘 드러남

#### ○ 교육청

-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문화다양성 보호 와 증진 교육 사업 공통적인 사항임

표 3-5.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청 조례

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201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문 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 진교육에 관한 조례(201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 (2)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 ① 예산

- O 아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추이를 정리한 표임
- O 2015년 대전광역시는 사업예산이 가장 적은 울산광역시 이전 순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이었음
- O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다른 지 방자치단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적은 예산임

표 3-6.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예산 추이

지자체	2015	2016	2017	2018
서울특별시	133,642	223,268.2	207,288.6	206,761.0
부산광역시	1,484	59,747.0	61,326.7	37,282.9
대구광역시	10,293	25,691.1	20,323.5	23,442.1
 인천광역시	2,131	58,140.6	40,905.2	55,817.3
광주광역시	0	6,566.9	1,240.0	7,998.7
대전광역시	215	5,678.9	2,556.6	4,623.1
울산광역시	190	3,429.6	1,375.8	2,875.1
세종특별자치시	0	1,188.0	1,326.0	1,460.0
 경기도	11,010	35,247.1	9,660.7	76,289.6
	0	5,889.0	1,265.2	23,884.2
충청북도	6,013	16,836.9	18,287.1	9,633.7
 충청남도	2,722	5,601.3	4,540.4	41,360.6
 전라북도	10,633	7,677.4	7,761.9	41,360.6
전라남도	1,918	6,782.3	9,408.9	41,346.0
 경상북도	28,935	5,831.7	16,763.8	22,529.0
 경상남도	3,413	2,121.6	8,233.5	13,879.0
제주특별자치도	0	2,127.0	1,215.0	1,887.0
합 계	212,588	471,713.6	413,478.8	594,402.9

- ② 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사업(6)
- 인식 개선과 가치 확산 : 문화다양성의 가치 이해와 확산을 목적으로 대상자 는 지역민이며 인식개선 캠페인, 축제 및 토론회,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을 내 용으로 함
- 문화기본권 신장 : 소수문화집단인 다문화이주민, 외국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활동지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소수문화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을 내용으로 함
- 갈등 해소와 주민 화합 : 문화 이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공 무원·교사 등 공공인력의 문화다양성 감수성 향상 교육, 문화예술 관련 매개 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함
- 정책추진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정책추진 체계 구축의 유형은 문화권 향유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를 제정하고 정비, 예산 확충, 기구 설치, 유 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함
- 실태파악과 정책 개발 :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사업을 평가, 소수문화자원조 사,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를 말함
- 국제문화교류 : 국가 문화다양성 정책 교류 및 협력체계 확대,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민간차원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함
- O 기타 : 위 제시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사업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문화다양성에 이바지하는 관련 사업, 조사연구, 캠페인, 미디어, 교육 등이 해당됨
- O 지방자치단체별 문화다양성 사업 사례7)
- 인식개선과 가치 확산 : '거리예술존 운영(서울특별시, 2018)', '고양 여성영 화제(경기도, 2018)'
- 문화기본권 신장 : '청춘극장 운영(서울특별시, 2018)',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부산광역시, 2018)'
- 갈등 해소와 주민 화합 :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서울특별시)', '상주시 할매할배의 날 기념행사(경상북도, 2018)'

<sup>6) 2017</sup>년 무지개다리 사업 제3차 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내용을 참고함

<sup>7)</sup> 사례를 2018년 기준으로 서울 특별시의 문화다양성 사업과 각 사업유형 중 문화다양성 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유형에 적시함

- 정책추진체계 구축 :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운영(서울특별시, 2018)', '완 주문화다양성 정책준비위(전라북도, 2018)'
-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 확산 무지개다리-부산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부산광역시, 2018)'
- 국제문화교류 : '국제 다양성 영화음악제(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해외문화 탐방 및 국제교류 사업 (충청남도, 2018)'
- O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에 따르면 광역시 중 대전 (64건)은 광주(52건) 다음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수가 적음
- 이와 같은 유형 분류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은 인식개선/가치확산 30건, 문화 기본권신장 17건, 갈등해소/주민화합 11건, 정책추진체계구축 2건, 실태파악/정책개발 2건, 국제문화교류 2건, 기타 0건임

표 3-7.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분류별 사업 수						전체 예산		
지역	인식 개선/가치 확산	문화 기본권 신장	갈등 해소/주민 화합	정책추진 체계구축	실태 파악/정책 개발	국제 문화 교류	기타	계	대비 비율 (%)
서울	91	169	48	7	16	18	0	349	0.65
부산	45	203	80	19	6	31	5	389	0.29
대구	27	34	15	1	0	18	22	117	0.28
인천	44	104	19	6	0	18	1	192	0.52
광주	14	17	7	8	2	4	0	52	0.15
대전	30	17	11	2	2	2	0	64	0.10
울산	11	33	19	12	0	4	2	81	0.07
세종	0	11	1	0	0	4	0	16	0.09
경기	81	161	59	13	4	43	4	365	0.26
강원	8	33	11	7	0	21	1	81	0.36
충북	23	86	26	6	0	20	1	162	0.51
충남	34	76	18	2	2	22	0	154	0.13
전북	36	87	32	18	7	18	0	198	0.59
전남	23	116	33	9	0	20	1	202	0.49
경북	32	88	50	3	1	17	0	191	0.23
경남	33	78	29	1	2	13	19	175	0.17
제주	0	8	12	0	0	4	0	2,424	0.03
계	532	1,321	470	114	42	277	56	2,812	0.36

## 2)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 (1) 다문화 지원 사업

- O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인천광역시, 2017)
- 전통문화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한국문화의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시행
- 옹진군 거주 다문화가족을 28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및 가족기능 가일 시하여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느끼고 다문화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갖 게 하여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상승을 도모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 운영 (광주광역시, 2017)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과년기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심의 및 외국인 다문화지원에 대한 전반 사항을 논의
-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2017)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결혼 이민자의 경제생활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가정 환경을 도모
- 3월부터 12월까지 결혼이주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및 미래설계 프로그램과 창업프로그램을 실시



그림 3-1.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42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 (2) 문화소외계층 대상 사업

- O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서울특별시, 2017)
  -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장애인 전문체육/생활체육/홍보협력 사업 지원, 서울 시 장애인 직장 운동경기부를 위탁 운영
  - 장애인 및 체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38,286명이 참여함
- O 청춘극장 운영 (서울특별시, 2017)
- 고령화시대 어르신 극장 운영을 통해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어르신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 702회의 영화 상영, 215회의 공연, 52회의 악기교실 그리고 16회의 찾아가 는 청춘 극장을 운영
-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인천광역시, 2016)
-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며 장애로 인해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각종 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1~3급 장애인 1가구에 1부씩 월 2회 보급을 원칙으로 하며, 총 2,650가구에 지원됨



그림 3-2. 청춘극장 운영



그림 3-3.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 (3) 세대 맞춤형 사업

- 청년문화 집중 지원 (부산광역시, 2016)
-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청년문화의 저변확대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문화도시를 조성을 도모
- 총 14개 사업(청년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아트마켓 활성화, 대학문화 활성화 지원, 청년문화 커뮤니티 뱅크, 청년문화 전문인력 양성, 청년예술인 공공시설·축제 매칭,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청년문화공간 콘텐츠 지원,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청년두드림-청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청년문화홍보,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이 추진됨



그림 3-4. 부산시에서 주최한 청년 대상 공모전

- O 빛고을 어르신 한마당축제 (광주광역시, 2016)
  - 대학별 장기자랑 및 위로 공연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
  - 모범 어르신을 표창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시행함. 또한 관내 대학 생 등 전문적인 봉사자 발굴에 기여

44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그림 3-5. 광주 빛고을 어르신 한마당축제

#### (4) 인권 감수성 증진 사업

- O 디아스포라영화제 (인천광역시, 2017)
  - 한국 최초 이민이 시작된 도시인 인천의 역사적·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문화다양성 및 디아스포라를 주제로한 문화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임
  - 제 6회를 맞이한 영화제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총 33개국 66편 87회차 영화 상영을 진행하였으며, 감독과의 대화 14회, 강 연 2회, 대담 4회, 토크 2회, 포럼 1회, 전시 2개, 교육(청소년영화캠프, 청소년영화감상문 공모전)을 진행하여 12.500여명이 참여



그림 3-6. 2017년 인천 디아스포라 영화제 포스터

- 미얀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광주광역시, 2016)
-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미얀마 88항쟁 인권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인권 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지원하고 교류 및 협력을 강화
- 88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민간 전문가가 2회 지 원 방문함
- 88항쟁 과정에서 생산된 단체·개인의 성명서, 유인물, 팜플릿, 신문 원본, 영상 등 확보방안,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협의하였으며, 미얀마 88항쟁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5·18 세계기록유산이 갖는 여러 가지 유사점을 공유하면서 향후 88 박물관과 5·18 기록관의 협력방안을 논의 중임



그림 3-7. 미얀마 88항쟁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 3) 해외의 문화다양성 정책 : 영미권, 유럽 등8)

#### (1) 캐나다 퀘벡 주 정부의 문화정책

- 퀘벡 정부의 문화정책(1992)은 퀘벡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술적 창 조력을 자극하며, 문화적 삶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을 목표로 함
- O 알베르타의 정신(The Spirit of Alberta)
- 2008년 알베르타(Alberta) 지역에서 만든 정책으로 a) 알베르타의 모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기회 제공, b) 문화 활동에 대한 공동체의 역량 강화, c) 알베르타의 전문예술인 및 기관의 역량 강화, d) 알베르타 문화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투자의 활성화 등으로 구성된 네 개의 중요한 목표를 설정함

# (2) 덴마크의 문화예술 관련 공공지원정책 (Public support to the arts and culture)

○ 덴마크에서 시각 예술, 음악, 연극, 영화, 도서관, 예술교육, 기본소양교육, 기록물, 박물관, 동물원, 문화 환경, 스포츠, 방송, 저작권 등의 분야는 문화 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시행은 전부 혹은 일부 공공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3) 오스트리아의 평화적 대화

○ 오스트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 문화권과의 평화적 대화를 이끌어 옴

<sup>8)</sup> 이 절은 김규원(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함

<sup>9)</sup> 지원금은 세금, 수수료(licence fee), 복권 및 축구 도박 수익에서 비롯됨.

- O 2007년 빈에서 열린 '중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 지도자 국제회의 (Women Leaders-Networking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Middle East)'는 국내외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대화와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O 다양성을 위한 음악 축제(Music Festival for Diversity)
- 오스트리아음악협회(Austria Music Council)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적 표현의 대중화를 시도하였음

## 4) 해외의 문화다양성 정책: 일본

#### (1) 문화다양성조약책정을 위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10)

- 풍부한 문화 다양성의 보호, 촉진 보장을 임무로 하고 있는 유네스코는 세계 유산협약으로 시작하여 2001년에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세계선언을 채택
- 나아가 무형유산보호조약을 성립시키는 등 문화 다양성의 보호, 촉진에 이바 지하여 국제적인 규범의 책정이나 각국의 활동을 지원
- O 일본 사회는 공식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촉진을 위한 향후 대책을 유 네스코의 틀 안에서의 검토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다는 생각을 견지
-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문화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성을 갖게 되면서 유네스코 에서 문화 다양성의 보호, 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기틀이 구축되는 것을 지지
- 다른 국제 약속과 법적 저촉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문화재, 서비스의 국제적 인 유통 촉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일본 국민에게 바람직한 일본문화의 방향성과 인류 전체에 바람직한 세계 문화의 방향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정부 간 조약책정 수속을 목표 로 함

<sup>10) 「2004</sup>년 일본 문화심의회문화정책부회, 문화다양성에 관한 부회(部會)」의 내용을 그대로 옮김.

<sup>48 /</sup>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 (2) 모법(母法)

- 문화예술기본법 (文化芸術基本法, 2001년 법률 제148호)
- 배경 : 본래는 문화예술진흥기본법(2001년 12월 7일 법률 제148호)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으로 2001년에 제정된 법률. 그러나 2017년 6월 23일의 법 개정이 되면서 문화예술기본법이 됨
- 목적 : 문화 예술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자(단체)의 자주적 활동의 촉진을 내용으로 하여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가지고 풍부한 국민 생활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파급효과 : 기본법 제정 후, 그 영향으로 전국 지방에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2012년도 말까지 26개의 도도부현(都道府 県)에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가 제정되게 됨
- 문화예술 비준기본계획 제1기 (文化芸術推進基本計画)
- 문화예술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해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 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 추진 기본계획- 문화 예술의 '다양한 가 치'를 살리며 미래 만들기〉를 책정
- 향후 5년(2018~2023년도)을 내다보는 것으로 책정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 (3) 지방의 문화진흥조례 개요

- 교토 문화예술도시창생조례 (京都文化芸術都市創生条例)
- 주요내용 : 2006년 교토의 뛰어난 문화 예술을 통해서 시민생활, 마을 조성을 활성화시키고 교토를 세계적인 문화 예술 도시로서 창생 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함
- 목적 : 10년간에 걸쳐 창생(創生)계획으로 내건 각 시책을 추진하여 생활 속 문화예술의 활성화, 주민의 문화예술 감성의 활력을 목표로 함.
- 파급효과 : 2006년 「국가전략으로서의 교토창생」이라는 관점에서 교토시의 향후 방침과 국가에 대한 요청, 제안을 종합해 「역사도시·교토창생책Ⅱ」를 책

정했음. 2007년 창생 조례에 근거해 2017년 3월까지 10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교토 문화예술도시창생계획」(이하「창생계획」)을 책정함

- O 오사카부(府) 문화진흥조례 (大阪府文化振興条例)
- 주요내용 : 연계 및 협력 하에 문화의 진흥을 추진함으로써 마음이 풍요롭고 윤택한 부민생활을 실현하고, 개성 있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배경과 목적 : 문화가 사람들의 삶의 보람과 창조력의 원천임을 고려하여, 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기본이념과 부(府)의 책무와 부민(府民) 및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지정
- 사이타마시(市) 문화예술 도시 창조 조례(さいたま市文化芸術都市創造条例)
  - 배경과 목적 : 2001년 12월에 「사이타마시 문화예술 도시 창조 조례」를 제 정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여 시민 등이 싱싱하 고 마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창조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문화예술도시의 창조에 관하여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시민 등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문화예술도시의 창조 를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지정함
- 오키나와현 문화예술진흥조례 (沖縄県文化芸術振興条例)
- 배경 : 2005년 3월 「오키나와현 문화예술진흥 지침」의 개정을 실시하여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전개함. 동시에 현 내에서도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면서 2013년 10월 「오키나와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됨
- 파급효과 : 조례 제정 이전에는 문화예술이라는 영역 전체의 진흥에 관한 포 괄적인 조례는 존재하지 않았음. 그러나 「오키나와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 정되면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같은 다른 조례의 상위에 정서를 매길 수 있는 기본 조례로서 기능하게 됨

#### (4) 소수자를 위한 정책

- O 장애인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의 비준에 관한 법률 (2018년 법률 제 47호)
- 주요 내용: 2018년 6월 공포, 시행. 문화예술을 창조하거나 또는 누리는 자의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풍요로움이나 상호이해를 가져다구는 것임을 감안하여 문화예술기본법 및 장애인기본법의 기본적인 이념에따라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에 관해 기본이념, 기본계획의 책정, 기타 기본이 되는 사항을 지정
- 목적 :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개성과 능력 발휘 및 사회참가의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아이누 문화진흥 (アイヌ文化の振興)
- 아이누족(族): 현재 홋카이도와 혼슈의 도호쿠 지방(東北地方), 러시아의 쿠 릴 열도, 사할린 섬, 캄차카 반도에 정착해 살던 선주민으로 일본의 주를 이루는 야마토 민족과는 다른 북방계의 민족으로 이들은 역사적으로 개별적인 부족 국가 형태와 독자적 고립어인 아이누어를 사용
- 아이누족의 역사적 배경: 메이지 정부(1868~1912)는 아이누의 전통적 생활 관습을 강제로 금지시키는가 하면 홋카이도 개척과정에서 그들을 강제로 이 주시켜 일본에 편입시킴. 또는 대다수는 일본에 동화되어 일본어를 사용하지 만 극심한 인종차별 때문에 아이누족임을 숨기며 살아가기도 함
- 목적 : 「아이누 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의 전통 등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에 관한 법률(이하 '아이누 문화 진흥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실시하는 단체로 공익 재단법인으로 지정됨. 2019년 4월 '아이누 문화 진흥법'이 폐지되면서 같은 내용으로 「아이누 사람들의 자부심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위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아이누 시책 추진법')」이 새롭게 제정됨
- 주요 내용: 아이누 민족 문화재단이 실시하는 아이누에 관한 연구조성, 아이누어의 진흥, 아이누 문화의 전승 재생이나 문화 교류, 보급 사업, 뛰어난 아이누 문화 활동의 표창이나 아이누의 전통적 생활공간(이오루/차ル: 아이누어로 '이오루'란 사냥·채집을 하는 사냥터를 의미)의 재생 사업 등을 지원



그림 3-8. 2020년 아이누국립박물관 개관 행사



그림 3-9. 2019년 아이누 신법(新法)제정

DSI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검토

- 1.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대전광역시의 사회적 여건
- 2. 문화다양성의 쟁점화 과정과 지역사회 의견
- 3. 대전지역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4장

## 1.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대전광역시의 사회적 여건

## 1) 대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대전의 외국인 비율

- O 신흥도시 외국인 주민수는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 타)등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O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유학생, 기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한편, 결혼 이민자는 극적인 증가세는 보이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증가하는 중
- O 지역구별 외국인 주민
- 외국인 주민 수는 유성구, 동구, 서구 순으로 많음
- 유성구의 경우, 유학생 수가 많은데 이는 유성구에 대학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대덕대학교, 충남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KAIST),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 반면, 외국계 주민 자녀 수는 서구, 동구 순으로 많음
- 따라서 유학생 지원과 다문화가정 자녀(외국계 주민 자녀 포함)에 대한 지역 구에 따른 교육 지원정책이 요구됨

표 4-1. 대전광역시 외국인 주민 수

연도별	**************************************	01701	ō	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	단위: 명)		한국	외국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수	외국인 주민 수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	국적 취득자	주민 자녀
2010	484,180	19,699	15,554	4,092	2,853	5,272	1,078	2,259	1,264	2,881
2011	1,503,664	21,360	16,433	3,917	3,270	5,664	1,557	2,025	1,488	3,439
2012	1,515,603	22,499	16,888	3,992	3,359	5,413	1,841	2,283	1,764	3,847
2013	1,532,811	23,729	17,003	3,624	3,515	4,852	2,205	2,807	2,060	4,666
2014	1,531,809	25,190	18,169	3,759	3,463	5,353	2,544	3,050	2,287	4,734
2015	1,538,394	25,886	19,080	3,313	3,365	5,149	1,758	5,495	2,245	4,561
2016	1,535,445	26,656	19,687	3,079	3,361	5,467	1,644	6,136	2,538	4,431
2017	1,525,849	28,404	20,534	2,826	3,346	6,003	1,805	6,554	2,760	5,110
2018	1,511,214	31,100	22,858	2,903	3,355	6,470	1,821	8,309	2,877	5,365
동구	237,297	7,152	5,553	421	644	2,629	206	1,653	550	1,049
중구	239,284	3,400	1,947	272	559	55	261	800	514	939
서구	484,492	6,262	4,249	579	904	731	450	1,585	690	1,323
유성구	365,833	9,697	8,101	865	689	2,750	657	3,140	565	1,031
대덕구	184,308	4,589	3,008	766	559	305	247	1,131	558	1,023

#### (2) 지역별 연령층과 성비

- O 아래의 표는 대전광역시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를 표로 정리함
- O 아동, 청소년, 노인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역은 세대별 특성에 맞춘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유성구, 서구 순으로 아동, 청소년 인구가 많으므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 문화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함
- 서구, 중구 순으로 7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많으므로 노인의 건강, 문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인과 관련한 문화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 O 여성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여성 중심의 문화다양성 사업이나 정책이 필요함
- 서구, 유성구 순으로 여성 인구가 많음
- 여성을 청소년, 청년 여성, 여성 중장년층, 여성 노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세분화시켜 이에 맞춘 문화다양성 정책이 필요함

표 4-2, 2019년 대전광역시 지역별, 성별 거주 지역

구	분(단위: 명)	전체	동구	서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전체		1,474,870	177,031	481,222	175,770	240,473	349,373
성별	남성	736,607	114,447	236,851	90,030	118,864	176,415
70 Z	여성	112,324	112,324	244,371	87,001	121,609	172,371
	0~9세	121,777	16,242	40,326	11,901	16,632	36,676
	10~19세	152,932	20,851	51,967	17,764	23,278	39,113
	20~29세	211,791	30,639	73,381	24,868	31,338	51,565
연	30~39세	198,994	27,140	67,470	20,111	27,693	56,580
령	40~49세	240,115	34,305	79,344	28,213	37,755	60,498
별	50~59세	241,089	37,221	77,708	33,231	39,919	53,010
	60~69세	166,744	30,708	50,973	22,554	31,914	30,595
	70~79세	86,943	18,404	24,457	11,546	19,818	12,718
	80세 이상	43,880	8,870	12,458	5,582	9,853	7,117

# 2) 문화다양성을 특화하기에 적합한 포용도시 대전

# (1) 대전이라는 도시의 생성

- O 대전의 도시형성 역사
- 20세기 이전 '한밭'이라는 명칭
- 20세기에 들어서도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면" 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했던 적 도 있었지만, "대전면"에서 주변 지역을 병합하면서 "대전부(府)"로 승격
- 해방 후, '대전부'는 '대전시'로 불리게 됨
- 1989년 대덕군을 흡수하여 '대전직할시' 승격되고, 1995년 '대전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
- 대전지역의 인구 유입 특성 (한국은행, 2019)
- 신축 주택 거주를 위한 세종으로의 이주로 인해 타 시도로의 순유출 규모가 매우 큰 편임

- 대전 지역 내에서는 여타 구(동구·대덕구·중구·서구)에서 유성구로의 순유입 이 두드러짐
-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학 진학 여건, 연구기관 등 고학력자가 선호하는 일자리 등으로 타 지방(수도권 제외)으로부터의 직업·교육 목적순유 입이 꾸준한 반면, 수도권으로는 같은 목적의 순유출이 발생
- O 토박이가 적은 대전
- 대전에 30년 이상 거주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 50%도 되지 않음 대전에 20년 미만 거주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30% 조금 넘은 응답률을 보임
- 이는 대전에 토박이가 적으며,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대전의 인구사회학적 환경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샐러드볼(Salad Bowl)'로서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sup>11)</sup>

표 4-3. 대전 거주기간 (단위: %)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평균
12.3	18.2	22.5	17.2	29.8	29.65

### (2) 대전지역에 관한 일반적 인식

- 대전의 도시브랜드 관련 조사 (한상헌, 2016)
- 대전으로 유입된 인구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음
- 뒤이어 대구, 부산, 인천 등 광역시 인구가 유입됨
- 거주 이전의 이유 '직장과 회사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라는 응답임

<sup>11) &#</sup>x27;샐러드볼'은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로, 초기에 문화 간 융합과 동화를 강조하는 용광로(melting pot)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의 그릇 안에 다양한 문화들이 고유한 특색 을 지니며 존중받는 샐러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 대전 거주자의 대전에 대한 인식: '과학의 도시', '교통의 도시', '엑스포' 순으로 인식하는 반면 타 지역 거주자는 대전시에 대한 이미지로 '엑스포', '과학의 도시', '조용한/차분한'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 ○ 대전과 '노잼12)'의 도시

- 특색 없고 재미없는 도시를 이르는 신조어로 SNS 상에 퍼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 이렇다 할 명소가 선뜻 떠오르지 않는 대전의 특징을 잘 요약해 SNS에서 많 은 공감을 받음
- '노잼'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대전의 대내외적 문화와 관광이미지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



그림 4-1. '노잼도시 대전'라는 프레임을 역이용한 관광공모전 개최

<sup>12)</sup> No와 재미의 줄임말로 '재미없다'는 의미의 유행어. 반대의 의미로 '유(有)잼'이 있음

# 2. 문화다양성의 쟁점화 과정과 지역사회 의견

# 1) 문화다양성 법제 마련 움직임과 갈등

### (1) 성평등 관련 제도 마련

- O 대전광역시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평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으나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침을 겪음
- ① 대전 성평등기본 조례의 제정과 반발13)
- O 2001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이후 2015년 7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 조례'를 제정, 시행
- 10월 일부 개정, 조례 명칭을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변경
- 제3조 2항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2조 '성소수자 지원' 항목 삭 제. 개정
- 여성가족부의 권고, 보수 개신교 측의 반발
- ② 지자체의 '양성평등' 명칭 사용 확산
- O 중앙정부: 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칭함
- 광역단위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만이 '성평등' 명칭 사용하였고, 다른 지자체는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통일
- '성평등'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도 내용 자체는 '양성평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평등' 명칭으로 차별화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음

<sup>13)</sup> 당시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초 입법예고 기간 중에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사회적 개념에 대한 법제처 질의 결과, 사회적 개념이라는 불확실한 용어를 조례에 담아서는 법취지에 안 맞는다,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법제처 질의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포함해서 저희한테 검토 결과를보내주어서 그것이 조례에 담기게 되었습니다."라고 해명

<sup>60 /</sup>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 ③ 대전광역시 성평등 조례에 대한 반발
-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민원 제기
- O 여성가족부 입장<sup>14)</sup>
-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del>동등</del>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 하기 위한 법"
-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전시는 이 취지에서 벗어남"
- O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에 개정 요청
- ④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및 조항삭제
- 성평등조례 제정 이후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 단체로부터 강한 비판 과 공격에 직면
- O 7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힘
- O 제정 3개월 만에 대전광역시장의 발의로 조례명 및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함
- ⑤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조례가 지니는 함의
- O '성평등'이라는 명칭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진보적인 태도를 표출<sup>15)</sup>
- 정책 주요사항
  -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다.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

<sup>14)</sup> 당시 대전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등을 통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남·여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 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시의 성평등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귀 시의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개정 요청을 받음(제221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9.16.)

<sup>15)</sup> 이러한 개정 과정에서, 대전지역은 물론 전국단위의 여성단체, 성소수자 단체 및 동아리,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단체연명 등이 진행됨

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라. 평등과 다양성을 보 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마.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 (2) 학생인권 관련 제도 마련

- ① 학생인권조례
- O 학생인권조례의 가치 : 학생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 증진
- O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빈곤, 장애, 한부모, 다문화, 외국인,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 경기도(2011), 광주광역시(2012), 서울특별시(2012), 전라북도(2013)에서 제정되어 있음
- ② 대전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발단
- O 2016년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음
- O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지지와 반발
-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지지: 전교조 대전지부, 학생단체,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
-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철회: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기독교연합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합'
- 반대 측 입장<sup>16)</sup> :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여 교권의 약화와 학생들의 일탈 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

<sup>16) 2016</sup>년 3월 16일,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측 진영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학생과 교사를 대결구도로 만들어 교권을 침해한다"며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데다,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에 연계하라고 하고있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인 만큼 이는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up>62 /</sup>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 ③ 대전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위기
- O 2016년 대전시의회 주최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O 모임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청회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해 회의 시작 20분 만에 중단되는 등의 갈등 양상을 보여줌
- ④ 대전광역시의 학생인권조례가 지니는 함의
- O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적 대립 경향을 보임
- 대립의 결과로 아직까지도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① 발단 (2019년 10월 25일)
- O 10월 25일: 조성칠 의원 외 13인이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안을 제출
- ② 전개(2019년 10월 28일~30일)
- O 10월 28일: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됨
- O 10월 30일: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8일까지 의견서를 수리
- ③ 위기 (2019년 10월 30일~11월 25일)
- O 10월 30일: 보수·기독교계에서 반대의견 주장. 의견서 수렴 결과, 271건(이 메일 178, 팩스 93), 철회서명 229명이 반대의견<sup>17)</sup>을 제출

<sup>17)</sup> 반대의견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조항에 대한 민원보다 '문화다양성'이라는 조례명에 초점을 맞춤 (해당 조례안이 동성애를 옹호함/과격 이슬람 등의 문호를 열수 있음/트랜스젠더를 여자로 인정 하며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천, 김포에서 철회한 조례를 대전시가 발의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임)

- O 11월 25일: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제출, 상임위 통과
- 문화다양성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과격 이슬람 등에 문호를 열 수 있다며 조례안 철회 민원과 집회가 열리는 여론을 고려하여, 논의 끝에 '양성평 등'과 '선량한 풍속 등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안 제3조 신설)'
- O 11월 25일 이후: 보수·기독교계에서의 계속된 반발 시위
- ④ 결말 (2019년 12월 13일)
- O 12월 13일: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상정 불발
- 수정가결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지 못함

### 2) 문화다양성 쟁점에 관한 사회적 여론 추이

○ 충청남도 인권조례,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차별금지법 등 문화다양 성과 관련한 법제 마련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들이 쟁점화될 때마다 지역 사 회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공론장에 표출되었는지를 언론 기사를 통해 알아봄

### (1) 지역 언론의 관심

- 전국적 차원에서 미디어와 언론에서 보이는 관심에 비해 대전 지역의 언론에 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폭넓은 관심이나 심도 있는 분석을 찾아보기 어려움
- 주로 관련 행사들을 단신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역면에서도 다 문화에 대한 보도들이 주를 이루어 옴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론보도 분석 시스템인〈BIG KINDS〉 를 통해 대전지역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기사에 대한 경향을 살펴봄

- 분석대상은 대전지역의 일간신문 중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충청일보〉, 〈중부매일〉을 표본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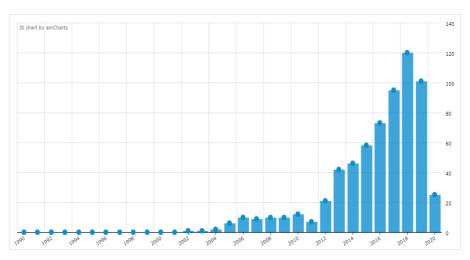


그림 4-2. 대전지역 일간지의 문화다양성 보도량(1990~2020 상반기)

- O 1990년대부터 문화다양성에 관한 보도량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기사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 거의 보도량이 없던 것에 비해 2000년대 중반부터 간헐적으로 문화다양성 관련 기사가 출현하다가, 2010년대부터 상대적으로 급증하는(2018년에는 120건) 흐름을 보임
- 대전지역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화두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04년으로 당시 스크린쿼터를 주제로 한 대전일보의 칼럼이었음
- 그러나 한미FTA와 문화개방이라는 전국적으로 논의되는 화두를 지역언론에 서 받은 것일 뿐 지역사회 내부에서 형성된 문화다양성 논의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임
- O 2013년 이후 문화다양성 관련 기사가 급증한 것은 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서 행사 시기에 맞춰 이를 보도하는 소식들이 증가폭을 좌우함
- 2014년엔 지역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담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관련된 보도들과,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우리 多 합창단'〉소식, 〈다문화 화 합한마당 '문화多이음 축제'〉관련 소식들이 많았음

- 2015년에는 2014년 제정되었던 문화기본법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책무를 촉구하는 내용과 같은 해 대전문화재단이 공표한 '대전 시민 문화비전 2030 선포식' 소개, 카이스트의 외국인 학생회와 〈2015 KAIST국제음식축제〉소식 등을 전하였고, "대전시, 외국인 정착지원 팔걷어(대전일보)"에서는 대전시의 '외국인정책시행계획'수립 추진 내용을 상세히 보도
- 2016년에는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소식을 전하며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주 목한 대전일보의 칼럼 "어우러짐의 가치"가 눈에 띔
- 2019년에는 대전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주간' 소식, 무지개다리사업 '우리多 문화人' 캠페인 개최 소식, 새로운대전위원회 정책워크숍 분과 토론회에서 '문화다양성과 도시문화 정체성 확립'을 전략목표로 삼았다는 단신들이 등장
- 단순한 보도량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보인 관심의 초점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 에 주로 제시되고 있는 키워드를 추출해보면 중앙 일간지와 지역 일간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
- 중앙 일간지의 경우, '유네스코', '스크린쿼터'등 국제 사회간 문화적 교류와 갈등, 쟁점에 관해 관심을 표명함. 아울러 '세계화', 'FTA'등 문화를 포괄하는 지정학적 거시담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지역 일간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였던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사업 인 '무지개다리 사업'이 독보적인데, 실제 기사 내용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라 단순 인용 스트레이트 기사가 대부분임
-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기사들의 상당 부분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주제로 하는 협약, 교육, 체험프로그램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이와 같은 보도 경향을 볼 때 현재까지 지역 일간지들이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 사회에 알리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그림 4-3. 중앙 일간지의 문화다양성 관련 보도에 대한 키워드 분석



그림 4-4. 대전지역 일간지의 문화다양성 관련 보도에 대한 키워드 분석

- 중앙 일간지와 대전지역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의 키워드 간 연관어를 분석 한 결과에서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 정도의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남
- 중앙 일간지들이 국제적 문화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는 반면, 대전 지역 일간지들의 보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전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등 기관명이 키워드로 등장하고 연관성을 지님

-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배분되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관해 단순 전달 보도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라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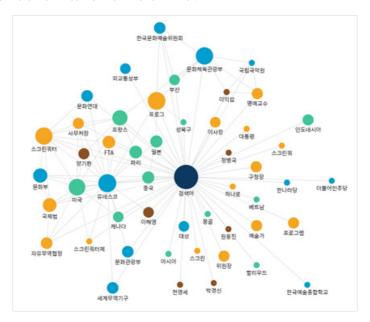


그림 4-5. 중앙 일간지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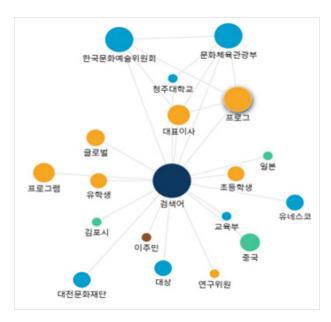


그림 4-6.대전지역 일간지의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

#### (2) 문화다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

- 대전지역 언론들이 문화다양성에 관해 대부분 소식전달에 그치고 있어 문화 다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과 가치에 관한 담론 이 오고가는 공론장으로서 기능한 사례를 찾기는 어려움
- O 전국 단위 언론에서 지역문화의 문화다양성을 환기하는 주목할 만한 기사들 이 등장
  - 일례로 2015년 〈오마이뉴스〉에서는 지역 출판을 다루면서, 지역출판은 문화다양성의 보고이자 저장소, 지식 문화공공재이자 고유한 문화라 주장하며, 그 긍정적 사례 중 하나로 대전의 문화잡지 〈토마토〉를 소개
- 대전 지역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논하는 기사는 주로 '표현의 다양성' 차원에서 개진되었음
- 지자체가 문화다양성에 무관심하다고 질타하는 보도도 드물게 등장. 대표적으로 2016년에 〈금강일보〉에서는 "정부사업에 지원조차 못하는 대전문화재 단"이라는 기사를 통해 자체부담금 기준 미달(기준 사항 10%)로 인해 시작 첫해 이후 '무지개 다리 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고 대전 시와 시의회의 관심을 촉구함

# (3)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

- O 문화다양성 관련 제도와 정책을 반대하는 논거는 특정 종교와 성적 태도에 대한 배타적 혐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 문화다양성 조례 반대는 보수시민단체 및 보수종 개신교 단체가 핵심적. 이들은 '나쁜 조례폐지를 위한 교계 및 시민단체연합'을 결성하여 반대집회 및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쳐 나감
- 이러한 반대 주장의 핵심은 동성애와 이슬람교 등의 확산 등에 대한 우려로,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문화다양성조례를 모두 같은 범주에 두고 사회에 악영 향을 끼친다며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임

동성애를 조장하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며 인권은 필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음 그러나 바른 인권이어야 함 거짓 잘못된 인권은 인권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땅에서 대통령과 충남지사는 바른길을 가야 한다. 우리의 뜻이 관철되고 승리할 때까지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겠다. - 충남범도민대회 최태순 공동대표(2017.10.19일)

최근 사회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종교는 물론 학교, 군대 등 여러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성명서 중(2020.7.20)

○ 문화다양성 관련 법적 제도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찬반의 입장이 엇갈리면 서 다음과 같이 기독교 내에서도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사람 을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문화 등의 차이로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기독 교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

대전시와 시의회는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반대 의견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인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도 현재 용역을 마친 상황이므로 이를 조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전에 거주하는 3만 여명의 외국인주민들의 문화다양성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찬성 성명서 중(2019.12.10)

# 3.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 본 자료는 2015년~201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 서에 부록에 첨부된 연도별 문화다양성 사업 목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O 해당 목록의 정책들을 하위범주, 정책대상, 추진방식, 정책목적등 변수로 계 량화하여 분석하였음
- O 다만, 해당 자료는 각 부처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판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이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여성정책 부문이 부재)

# 1) 일반 현황

### (1) 연도별18)

○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산술적으로 볼 때 점진적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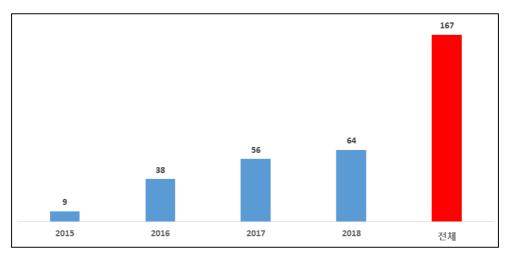


그림 4-7. 연도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의 변화

<sup>18)</sup>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이 시행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

#### O 2015년

- 대전광역시는 가치확산 유형 사업 2건, 소수문화의 영향력 증대 사업 5건, 그리고 각 1건의 조사연구, 교육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5년 대전은 다른 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 인 정책을 펼쳤음(서울 51개, 부산 7개, 대구 42개, 인천 31개, 울산 4개)
- 2015년 당시는 문화다양성 사업의 유형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대전광역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진 않았음

표 4-	-5. 2015	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	----------	---------	-------	----

사업유형	추진기관	사업명	
인식 개선·가치 확산	대전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새생명 축하 음악회	
	대전 대덕구	동춘당문화제	
사스모형 여하려 주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딩동댕 열린극장	
소수문화 영향력 증대	대전광역시	사랑방이 두런두런	
실태 파악·정책 개발 대전복지재단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교육 사업 대전교육연수원		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 교육운영	

#### O 2016년

-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총 38개가 추진되었으며, 추진 사업 중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이 16개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7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 '정책 추진체계 구축사업', '국제 문화교류사업'은 각 4개, '정책개발 사업'은 3개가 추진됨
-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나 참여기회 는 활발하지만, 대전 지역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사업은 미진함

표 4-6. 2016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유형	추진기관	사업명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	
인식 개선 ·가치 확산	대전시립박물관	문화다양성교육 다가치 다문화	
101 45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Talk Talk'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문화 표현 기본권 신장 ·기회 확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운영	
50 HH 4-11	대전문화재단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대전광역시청	다문화 화합 한마당	
문화 간 공감대 형성·갈등 해소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90 E0 417	대전문화재단	문화포럼잇슈	
정책 추진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체계 구축	대전광역시청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정책세미나	
실태 파악 ·정책 개발	대전복지재단	중증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욕구에 관한 연구	
011112	대전복지재단	장애유형별 일자리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	
그레 모칭 그리	대전문화재단	제33회 중국하얼빈 여름 음악회 <sup>19)</sup>	
국제 문화 교류	대전문화재단	만화와 함께 하는 위안부 이야기 〈나비의 노래〉	

#### O 2017년

-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총 56개가 추진되었으며, 추진 사업 중 '인 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이 24개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19개,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9개,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2개, '국제 문화교류사업', '국제문화교류'는 각 1개씩 추진됨
- 세부적으로 사업유형이 구분되었으며, 대전시도 이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다양성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다른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서울 116개, 부산 371개, 대구 125개, 인천 140개, 대전 38개, 울산 111개, 광주 75개)

<sup>19)</sup>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으로 개최됨

- 전통문화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흥미를 돋을 수 있는 주 제 및 장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과 어울리는 자리나 프로그램 마련보다 특정 대상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의 성격이 강함

표 4-7. 2017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유형	추진기관	사업명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가족환경사업
인식 개선	대전문화재단	대전전통나래관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교실
·가치 확산	대전문화재단	무형문화 따라잡기 전수학교
	대전광역시	야행 프로그램
	대전문화재단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문화 표현	대전한밭도서관	그림책 읽으며 한글 배우며
기본권 신장 ·기회 확대	대전문화재단	장애인 창작 집필집 지원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학관 문학교육 프로그램
	대전문화재단	문화포럼잇슈
문화 간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
공감대 형성 ·갈등 해소	대전광역시	다문화 화합 한마당 Walk Together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체험관 조성 물품 지원
정책 추진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체계 구축	대전광역시청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실태 파악	대전문화재단	대전 문화예술 정책토론 광장
·정책 개발	대전문화재단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

#### O 2018년

- 대전광역시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총 64개가 추진되었으며, 추진 사업 중 '인 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이 30개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17개,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11개,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국제 문화교류사업', '국제문화교류'는 각 2개씩 추진됨

- 여전히 대전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문화다양성이 적극성이 떨어짐
- 특히,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국제문화 교류 사업이 소극적임
-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다문화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아이부터 노인까지 세대공감을 하고 세대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이나 정책이 부재함
- 노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나 지원 등이 부재함

표 4-8. 2018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유형	추진기관	사업명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Talk Talk]		
인식 개선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가족환경사업		
·가치 확산	대전문화재단	대전전통나래관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교실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육 운영		
	대전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 표현	대전한밭도서관	다문화어린이를 위한 신나는 책읽기		
기본권 신장 ·기회 확대	대전한밭도서관	시각장애인 문학기행		
	대전일보사	다문화소식지		
 문화 간	대전광역시	다문화 화합 한마당 Walk Together		
고 · 그 공감대 형성	대전광역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체험관 조성 물품 지원		
·갈등 해소	대전광역시	인식개선 및 공동체 사업〈하모니〉		
 정책 추진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체계 구축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대표자회		
실태 파악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정책 토론광장		
·정책 개발		다문화가족 요구도 조사		
국제 문화	대전문화재단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교류	대전문화재단	무형문화재 특별공연		

### (2) 정책기관별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기관별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대전문화재단이 가장 많이 추진했으며,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 다음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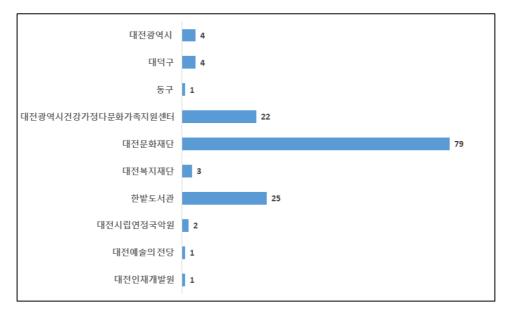


그림 4-8 정책기관별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사업

○ 문화다양성 사업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 지원 시설은 대전 지역에 다음 표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

표 4-9. 대전시 소재 다문화 지원 시설 및 연구기관

	기관 및 시설
유성구(2)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봉명동) - 대전시 거점센터, 다문화커뮤니티센터(구암동)
대덕구(3)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오정동), 대전다문화아동센터(대화동). 대전광역시교육청다문화교육원(오정동)
서구(3)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마동), 서부다문화교육센터(도마동), 한국다문화연구원(탄방동)
중구(2)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흥동), 동부다문화교육센터(대흥동)
동구(1)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양동)

# 2) 사업 내용상 특징

### (1) 정책대상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을 대상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시민, 다문화가정,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가장 많음
- 동일한 외국인의 맥락이짐나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미진함
- 또한, 노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미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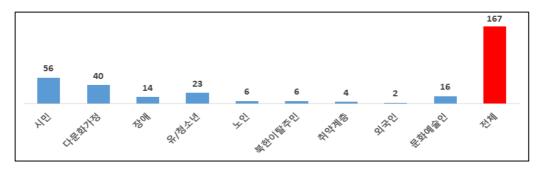


그림 4-9.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사업의 정책대상별 분포

### (2) 추진방식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방식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교육, 체험, 네트워크와 같은 추진방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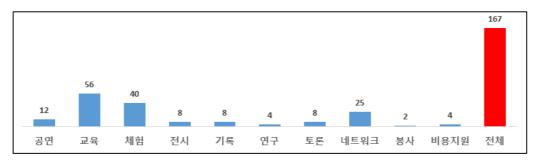


그림 4-10.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사업의 추진방식별 분포

### (3) 정책목적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을 정책목적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O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기본권 신장의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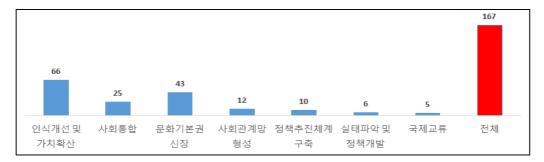


그림 4-11.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사업의 정책목적별 분포

### (4) 정책범주

O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을 하위범주별로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대전은 전통문화와 관련한 문화다양성 정책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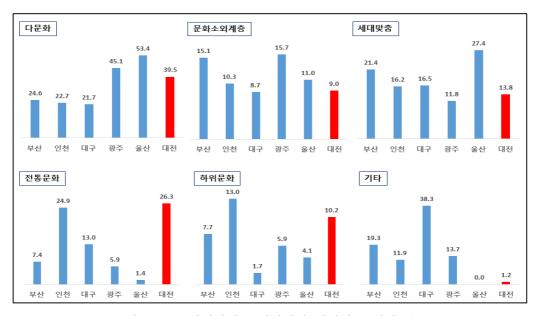


그림 4-12. 광역시별 문화다양성 사업의 주제별 분포

# 3)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사업의 종합적 특성

- O 다양성 정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O 하위범주로서 다문화의 비중이 높음
- 정책대상으로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O 추진방식으로는 교육과 체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O 정책목적으로는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이가장 높고, 이어서 문화기본권신장의 비중이 높음
- O 전체적인 예산에서 문화기본권신장을 위한 지원의 비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DSI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

- 1.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대전시 정책 기조
- 2. 전략 사업 제안

5장

# 1.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대전시 정책 기조

# 1)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

### (1) 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인식

- O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점임
- 문화다양성의 개념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필요성과 가치, 이념에 대하여 폭넓게 공유되어야 정책 추진을 위한 지지기반이 탄탄해질 것임

### (2) 문화다양성 개념의 혼란과 피상적 에 따른 정책 추진의 혼선

- O 문화다양성 개념이 다층적인 특성은 한편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이 본래의 취 지와 달리 변질되거나 협의의 의미로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지역사회,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사업 진행시 제각각 필요 에 따라 사업을 해석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빈번함
- 문화다양성의 목적을 충분히 숙고하고 이에 부합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기보 다 사업 자체의 성과 지향적으로 매몰되게 됨

### (3) 문화다양성과 차별금지법,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 O 문화다양성, 충남인권조례, 대전학생인권조례 등 반대진영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음
- O 반발단체, 세력들이 공론장에 참여하면 질서가 잡히지 않음
- 일부 언론에서도 반발 세력으로 인해 보도가 어려움

O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조례들을 제정할 때 공공기관의 강력한 의지가 발동해 야 함

### 2) 정책의 기본 방향

### (1) 정책 추진 주체의 전문성 강화

- O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과 부처 설립, 전문지식이 있는 담당자 배 치가 필요함
-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와 담당자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임. 일례로 무지개사업의 경우 문화재단 내에서도 생활문화팀, 정책팀의 업무인지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부서의 성격이 불명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 향후 증가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사업을 위해서라도 전문 인력의 발굴은 시급 한 과제임

### (2) 사업의 지속성 담보

- O 일회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일상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속성의 사업과 정책을 추진
- 문화다양성 사업과 정책이 단순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확 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
- 관계자부터 사업까지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인식을 단순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
- 긍정적 사례: 2020년 대전광역시 시민 노랫말 시민공모

- 시민들이 노랫말 공모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공모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와 함께 합창곡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
- 일반시민들이 현재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마을합창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
-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활용하는 방식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다양성 사업은 문화다양성 인식을 널리 알리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여할 것임

### (3)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그동안 대전 시민들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인식에 대한 캠페인, 홍보가 필요함
- 무지개다리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해온 타 지역의 경우,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 있음
- 반면 대전의 경우, 시민 캠페인이 진행된 적이 없음

### (4) 다양한 형태의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진행

- 여전히 일상에서도 외국인,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기피의 여러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높다고 보 기 어려움
- 문화다양성과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 으로 실시해야 함
-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됨
- 문화다양성에 관련해서 세계인권선언 중 문화부분에 문화향유권, 문화저작권 과 같은 개념을 정규교과 과정 등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결되어야 함

#### (5) 문화다양성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진행

-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의 목적과 필요성을 유념하여 사업을 진행해 야 함
-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역 문화가 살아야 전체 한국의 문화가 살 수 있고, 지역사회의 문화가 살아야 이를 이루고 있는 작은 소집단들의 그 문화들이 살아난다는 중요성을 인식
- 문화다양성의 확산과 보존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보호와 지역 내의 집단, 지역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인식

# 2) 선결 과제

#### (1)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재발의

- 대전시의 문화다양성 법적 제도화를 위해 그동안 이상민 국회의원의 차별금 지법 발의, 조성칠 대전시의회부의장의 문화다양성 조례 발의 등 노력이 지속 되었음
- O 2019년 12월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아직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유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안정 적 토대 구축을 위해 반드시 재발의 되어 통과되어야 함

### (2) 문화다양성에 쉽게 접근 : 일상적 언어로 다가가기

- 현재의 문화다양성 관련 법규들은 문화다양성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내용상 단어 사용과 문맥 구조가 평이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특히 '문화적 표현', '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모호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정리가 필요함

- 문화다양성 관련 법규들의 시행령에 '지원'의 범주들을 보면 '문화적 다양성' 인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편 이성을 위해 '문화 표현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흔함
- 정책 추진 주체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을 위해서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쉬운 의미 정립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정제 노력이 필요함

### (3) 상향식 사업추진 체계 도입과 확립

- 현재의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 향식으로 대전에 전달하고, 대전시에서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수동적으로 수 행하는 성격임
- 지역이 주체적으로 기반을 가지고 문화다양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상향 식 방식의 사업이 확대 도입 되어야 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대전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자체사업들도 편성해야 함

# 2. 전략 사업 제안

# 1) 문화다양성 교육

### (1)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의 체계적 확대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회적·문화적·경제 적 격차로 소외 받는 계층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갈등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
- 소수자, 소외계층 등 인권에 대한 교육,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함
- ② 주요 내용
- O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공무원 직무교육 등 공공기관에서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신설
- 대전인권센터,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유관기관·기구과 협력하여 대전시민대학 등의 평생 교육 과정으로서 신설
- 북한이탈주민이 향후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것을 대비하여, 이들이 사회에 적 응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시키는 관점에서 민주시민 교 육 내용을 설정
-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속적인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갈등이 분출되고 반지성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인권 교육과 차별 금지 교육을 심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정

#### ③ 추진 절차

- O 1단계: 평생교육기관, 인권교육 관련 단체과의 협력, 협정
- 2단계: 교육 과정과 내용, 교재 등을 마련
- O 3단계: 의무적 교육과정으로 제도화
- O 4단계: 대전시민에게 홍보하고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
- O 5단계: 기 이수자들끼리의 네트워크, 멘토링 시스템 마련

#### (2) 지역학교·평생학습시스템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지역의 인재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수업, 강의를 개설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현재적 삶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발견하는데 기여

#### ② 주요 내용

- 대전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대 전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련 수업 개설
-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문 화다양성의 가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다양성에 대 한 이해를 높임
- 지역대학 교과과정 내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강좌 개설
- O 지역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및 평생학습 시스템에 문화다양성 관련 내용을 강화
- 대전시 평생학습 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전시만의 문화다양성 교육 시스템 구축
- 지역대학의 특성에 따라 문화다양성 교육을 전문화하고, 각 대학이 위치한 자치구, 생활권과 연계하여 문화다양성 특성화 촉진

- ③ 추진 절차
-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및 MOU 체결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 대학 간 역할 분담
- O 대학별 교육 내용 지역 연계 특화, 대학 간 유기적 연계 지원

### (3) 온라인 문화다양성 교육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O 대전시 문화예술 공공시설에서 진행되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 개강좌 K-MOOC(케이-무크)와 같은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도입

※ MOOC란?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 웹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 기존의 온라인 학습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간 양방향 학습이 가능. 2018년 8월 기준으로 30개 이상의 대학(단체)이 참여, 300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 중

#### ② 주요 내용

-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 "e-대전 시민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다양 성 교육 과정을 도입
- O 대전의 문화예술 공공시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생활문화센터, 각 구별 문화 원 등에서 진행되는 강의들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획
- O 문화다양성 강의를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는 등 체계적인 문화다양 성 온라인 강좌 시스템 마련
- 진행된 강의를 기록화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함

#### ③ 추진 절차

O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협업(공간, 인력 등 제공), 문화원(대상자 모집, 강사진 구성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구축 및 역할 분담

- O 학기별 진행 강좌 구성안과 교육과정 체계 개발
- 문화다양성 강의와 교재 개발, 강의별 전문 강사 구성 등
- O 온라인 시스템 구축

# 2)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 (1) 문화다양성 학습 모임 지원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O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과 토론 속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진정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향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모임 형태의 만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O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학습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문화다양성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② 주요 내용
- O 대전지역의 인권 단체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연구모임(공부모임)을 진행할 때, 모임 비용과 공간을 지원
- O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 실천방안 등을 고민하는 학습 모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면과 비대면 등 폭넓은 교류 활동을 지원
- 자유로운 대화와 편안한 만남으로 문화다양성 학습하기 위해 일정 인원이 모임을 형성하여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책 또는 강의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시민들이 밖에서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

○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모두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고, 학습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이 실제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함양

#### ③ 추진 절차

- 문화다양성 학습모임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내용을 홍보. 대전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참여내용의 공유. 1년 동안 문화다양성 학습모임 에서 도출된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절차를 마련
-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대전지역 인권단체의 연구 모임, 공부 모임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중기 이후부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다양성을 학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과 필요한 경비를 지원
- ※ 참고: 솔루션 중심의 프로그램을 매개로 한 문화다양성 공동체 활성화
- □ 문화다양성 어울림
- 교육과 생활환경에 취약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적정과학 솔루션 공모 및 제안 발표
- \* 예를 들어, 북한과의 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법률과 한국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용어와 단어를 번역해주는 앱 등이 있음
-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모임
- 가장 중요한 것은 채택된 솔루션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구비하여 다문화 가족이 연중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운영을 지속하는 것임
- 추진 주체 : 대전시, 테크노파크, 대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KAIST 등
- 참여 대상 : KAIST와 대덕특구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대전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추진절차



## (2) 문화다양성 특화 예술창작 지원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O 지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다각적인 담론이 형성될 필 요가 있음
- 특히,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 문화다양 성에 특화된 예술창작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으로 문화다양성 담론 의 확산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O 대전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창의적인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지 원하여 예술가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

#### ② 주요 내용

- 지역 내의 예술인들이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예술 창작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O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작품공모전, 백일장, 연극,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의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
-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활동에 활력을 부여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와의 교감

#### ③ 추진 절차

○ 시에서는 문화다양성 예술창작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지원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발굴 하고 이를 확산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

# (3) 문화다양성 가치와 이해 확산을 위한 다각적 홍보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향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현재 시와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을 시민들이 인 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홍보체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음

#### ② 주요 내용

- O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과 시민들 간 활발한 의견 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혼합 방식의 홍보 체계를 마련(Blended Communication)
- 대전시에서 배포하는 잡지〈it's 대전〉등 공공기관의 오프라인 매체와 중앙· 지역신문, 온라인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문화다 양성 개념과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 전개
- 누구나 문화다양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의 참 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 기반을 구축
- 단기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입소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확산과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며, 단계 적으로 공공기관 매체, 방송, 인터넷 등의 미디어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
- 학교, 경로당, 문화센터, 지하철역, 지역카페, 은행, 일반기업, 공동체 공간 등 시민의 삶의 현장에 홍보 포스터·책자를 비치하는 등 생활 현장과 대상에 따라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체계 구축

# 3) 문화다양성 기반 구축

## (1) 문화다양성 거점 공간 조성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노후·유휴시설 을 활용한 거점 공간 제공,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

- O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예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조성 지원, 공공 문화시설 및 민간영역의 문화 활동 시설의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동체 활성화
-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문화 향유자인 대전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문화예술가 활동 및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② 주요 내용

- (자치구별 문화다양성 활동 공간 확대) 자치구에서 주민의 삶과 밀착하여 현 재 문화다양성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행정복지센터"에 문 화다양성 활동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과 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O (공공기관 연계)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을 문화다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특화하여 활용
- O (문화의 집) 특히, 공공문화시설 중 문화의 집을 문화다양성 거점공간으로 특화하여 활용
- '문화의 집'은 1996년 문화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기본권 확보, 문화민주 주의의 확산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문화예술체험 및 교육, 창작, 동아리 활동 등 생활속의 문화를 실현하고 소규모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기에 문화의 집은 시민과 밀착한 문화공간이라 할수 있으므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의 집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문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회 제공 및 문화공동체 양성
-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의집, 문화원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문화의집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다양성 센터로 활성화 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O (민간 문화활동 시설 연계) 독립서점, 민간 작은도서관 등 민간영역의 문화활동 시설 공간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활성화
- 문화다양성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노력도 중요함. 따라서 독립서점, 민간 작은도서관 같은 공간을 지원해주어 그 공간을 문화다양성 활동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O (유휴공간 활용) 원도심 내 노후 건축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예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문화다양성 예술가들의 창작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 창작인력 배출이 많거나 유학생이 많고 문화예술기능 도입이 용이한 관내 대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 거리를 조성

#### ③ 추진 절차

- O 사업내용 및 항목
- 민간 문화다양성 거점 시설을 지정하고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 지원항목 : 시설공사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공간운영비, 문화다양성활동 사업비
- 지워대상 및 기간
- 지원대상 :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문화다양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대전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원 만 19~39세 문화다양성)
- 지원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회(4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1년 단위 계약체결, 운영 결과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또는 해지함

## (2) 문화다양성 전문가 발굴·양성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시민들이 문화다양성을 향유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 여기에서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활동을 지원하는 강사와 지원자 등의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
- O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활동 참여 여부와 지속성이 달라 지므로,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 시스템 이 필요함

- ② 주요 내용
- 대전 시민에게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이 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문화다양성 전문가 발굴, 육성, 역량 강화 지원
- 문화다양성 창작자 양성: 문화예술계열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강의 개설과 교류를 정례화
- 문화다양성 전문 매개인력(강사, 기획자) 지원: 문화다양성 강사와 기획자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이들의 성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하 여 문화다양성 전문 매개 인력을 양성
- 문화다양성 대중화: 문화다양성 전문가들이 시민에게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과 예술 활동을 큐레이팅하는 프로그램 정기화

#### ③ 추진 절차

- 기초단계: 문화다양성 사업에 처음 접하거나 관심이 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단 계로, 문화다양성 아카데미 등으로 이론적 학습 내용 구성
- 심화단계: 문화다양성 활동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다양성 전문 가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단계로, 실제 현장을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
- 전문단계: 문화다양성 핵심 전문가를 위한 교육단계로,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성

## (3) 문화다양성 협력네트워크

- ① 추진배경과 목적
- 문화다양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활동 이 필수적임

#### ② 주요내용

○ 대전시에 소재한 다문화 관련 지원시설과 연구기관을 연계하여 문화다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각 기관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 대전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구마다 하나씩 있으며, 이 중 유성구 소재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전시 거점센터임
- 각 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대전에는 다문화커뮤니티센터, 대전 다문화아동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원, 서부다문화교육센터, 동부 다문화교육센터, 그리고 한국 다문화연구원 등이 있음
- 문화다양성 활성화의 중요한 척도로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활동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문화다양성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교류를 증가하는 것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임
- 문화다양성 활동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친숙 하게 만나는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논의가 숙고되어야 함

## (4) 문화다양성 정책 연구 개발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대전지역의 문화다양성 가치와 실천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 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 자료를 지역·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임
- O 문화 다양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Plan(계획) Do(추진) See(평가)라는 일련의 체계적 과정이 중요하며, 정책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모니터링 전문 인력이 필수적
- O 문화다양성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환류 체계 마련이 필요함
- ② 주요 내용
- O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모니터링 전문 양성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대전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연속형 심화 과정

- O 평가·모니터링 전문가 현장 활동
- 각 기관별·구별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모니터링 현장 실습과 현 장진입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 워크숍, 전문가 초청 기획 강좌 등 정기적인 교육, 교류 프로그램 개설

# 4) 문화다양성 특화 행사

## (1) '문화다양성주간' 개최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O 문화다양성을 통해 연대 간 사회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주 간'을 선포하고 '문화다양성'의 목적을 대전 전역에 확산하는 기획 행사 필요
- 기존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문화다양성 행사를 참조하여 문화다양성의 관 심과 참여를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속가능한 확산 방향을 모색
- ② 주요 내용
- O 대전의 문화다양성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위탁 운영을 실시한 다면 문화다양성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 O 문화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세미나, 문화다양성 주제 포럼 등 문화다양성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
- 전국의 문화다양성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발표와 토론의 장을 펼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도출된 문제의식을 정책 제안과 수립으로 발전시킴

## ③ 추진절차

- 문화다양성의 정책담론이 오고 가는 장으로서 종합 페스티벌 형식으로 개최
- 문화다양성에 관한 참여 주체, 관계자, 전문가와 일반 시민 대상으로 문화예 술교육 국제심포지엄,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운영

○ 매년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민-관, 민-민 거버넌스 플랫폼 형성의 토대를 마련

## (2)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다문화 이해 축제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대전은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을 매개로 문화적 다양성을 살리는 계기가 필요
- 현재 대전시는 낙후지역이라 여겨지는 지역에 유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아 이들이 과학 대중화를 확산하는 주체로 참여할 경우,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높임

#### ② 주요 내용

- 문화다양성의 주요한 부분인 다문화 가족의 국내 적응을 돕는 방안을 찾는 과학기술 솔루션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다문화 가족의 문화 적응 지원 사업을 위한 앱 개발 및 보급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정보, 교육정보, 취업·채용정보 및 다문화 소식을 제공하고 있는 '다누리' 웹 및 앱이 대표적인 사례
- 대전의 다문화 가족이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 대전지역의 문화, 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기존의 앱과 차별
- 세부 프로그램 : 대전에서 개최되는 다문화 과학축제는 다문화와 과학의 접 점을 녹여내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함
- 첫회 특별 주제 "우리가 몰랐던 과학문명사"
- 다문화가족의 배출국에서 이룬 과학기술적 성취 역사를 홍보하는 체험형 전시
- 예를 들면 인도의 IT기술, 아랍의 수학, 중국의 천문학, 인도네시아 항해술, 지리학 등

#### ③ 추진 절차

- O 추진 주체
  - 주관 기관으로 대전시, 테크노파크, 대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KAIST 등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 KAIST와 대덕특연구개발특구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대전 외국인 이 주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참여 대상이 됨
- 추진 절차 : 프로그램 기획 → 참가자 모집 → 과학축제 개최 → 평가·환류

## (3)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여행프로그램 운영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O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장소를 탐방하면서 문화다양성 도시로서 대전의 특성을 대내외 방문객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② 주요 내용

- 대전 문화다양성 투어 : 일종의 시티 투어 개념으로 인권, 사회적 혐오, 다문 화 등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연관된 다양한 유적이나 이야기를 소재로 관련 장소와 공간을 둘러보고 대전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개발
- '문화다양성'이라는 특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적 포용도시로서 대전 의 도시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대전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는 여행 프로그램
- 일방적인 대전 홍보 투어라기보다는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직접 느낄 수 있도 록 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
  - 대전의 역사와 다크투어리즘을 비롯한 문화적 유산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여 여행 코스와 스토리 개발
  - 전문가의 의견과 참여자의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고, 정교한 맵핑 작업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여행 지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
- O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크투어리즘과 인권체험 등의 여행코스를 폭넓게 조사하여 직접 여행지를 찾아다니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찾는 최근의 여행 트렌드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을 구성

- ③ 기대 효과
- 지속적 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성격을 가진 여행지의 자료가 축적되면서 문화다양성을 대전의 도시 특성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민의 정서적 화합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 5) 문화다양성 특화 지구 조성

- 대전광역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로서 문화다양성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음
- 대전 내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보다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쉽도록 돕고, 대전 시민과 이주민들 간의 다양한 문화 간의 접촉·만남·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 문화다양성 특화지구 조성" 프로 젝트를 추진
- O 문화다양성 특화 지구는 '문화다양성 학습지구(Education Zone)', '문화교환 시장(Cultural Exchange Zone)'의 두 축으로 구성

# (1) 문화다양성 학습지구 (Education Zone)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O 기존의 다문화 지원시설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학습지구' 형성
- 대전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 구마다 하나씩 있으며, 이 중 유성구 소재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전시 거점센터임. 또한 대전에는 다 문화커뮤니티센터, 대전다문화아동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원, 서부 다문화교육센터, 동부다문화교육센터, 그리고 한국 다문화연구원 등이 있음
- ② 주요 내용
- 다문화 이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로 된 안내 판과 이정표를 제공하고, 보도 유도 라인을 형성

- O 관련 시설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학습지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고, 관내 시설이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 지도도 같이 조성
- 보도블록에 각 나라의 국기나 문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디자인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함
  -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서초구의 '서래마을'에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삼색보 도블록이 조성되어 있음
- O 다문화 지원시설 인근에 잔디밭이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조성 해,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과 내국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그림 5-1. 서래로의 프랑스 국기 상징 보도블록

## (2) 문화교환시장 (Cultural Exchange Zone))

- ① 추진 배경과 목적
-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한민전통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골목형 시 장 육성사업이 추진되면서 '다문화 음식특화거리'가 2016년에 개장됨
- 한민전통시장의 다문화 음식특화거리에서는 10여 개의 다문화 음식 전통 공 예품을 판매함
- 각 구마다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교환시장을 조성하여 다문화 교류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면,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모국에서 즐기던 먹거리 및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다양한 문화도 함께 만나 볼 수있다는 이점이 있음





그림 5-2. 한민시장 다문화 음식특화거리 전경

- ② 추진 내용
-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문화교류 존'을 형성
- 문화교환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국어로 된 안내판 및 이정표 제공, 보도유 도 라인 형성, 공간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안내 지도를 형성
- O 현재 대전 엑스포 광장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대전 최대의 다문화 축제인 '다문화 화합 한마당 Walk Together'<sup>20)</sup>와 연계하여 특별행사 개최지로 활용



그림 5-3. 2019 다문화 화합한마당 포스터

<sup>20) &#</sup>x27;다문화화합한마당 Walk Together'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전시와 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매년 진행해온 '다문화 화합 한마당'과 NGO 월드휴먼브리지가 주최해온 'Walk Together'가 통합된 축제임

## 6) 대안적 독립문화 활성화로 문화 표현 다양성 특화

## (1) 필요성 : 문화독점 환경에 대한 대안적 문화공동체 활동

- 앞서 살펴본 '문화적 예외 정책' 논리에 따르면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한 국가 의 문화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일반상품과는 본질적으 로 다르며, 일례로 프랑스는 미국 영화와 TV 드라마 등 해외의 문화상품으로 부터 자국의 문화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율과 쿼터제를 지켜냄
-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비롯해 2004년 한미 FTA 등에 따른 대중문화의 개방에 직면해 스크린쿼터 축소로 대표되는 국내 시장 보호 규제의 완화 움직임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의 논리로 '문화적 예외'의 논리가 대두됨
-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 영화제, 장애인 영화제, 노동영화 제, 이주민영화제 등 다양한 주제와 대상들의 영화제가 요구되고 있지만, 현 재 대전광역시는 다양한 양상의 영화제가 없는 실정
-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은 독점적 플랫폼의 지배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문화생태계의 건강한 자립에 기여하는 커다란 의미를 지님

# (2) 사업 내용

- O 독립영화 전용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 주류 상업 영화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 동네서점의 몰락에 비춰 독립영화나 독립책방은 문화다양성의 중요한 보루라 할 수 있음
- 독립책방과 독립영화를 문화산업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문화다양성의 거점으로서 파악하여 정책 지원을 해 나가야 함
- O 팬덤, 마니아 문화를 대전의 도시 특성으로 부각해 특화
- 문화산업콘텐츠와 연계하여 '키덜트 축제' 개최.

- 기획 단계에서부터 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 영하도록 함. 대전 디쿠페스티벌과 결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참고문헌

- 김국남(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국제 정치논총〉 50(1), 2010.3, 261~284.
- 김규원(2014) 국외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보고서
- 김용섭(2017),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 〈행정법연구〉 51호, 189~213.
- 김정수(2006), 문화산업, 문화교역, 그리고 문화다양성.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2호, 41~67.
- 목혜린(2020), 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국내 이행과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 문화융합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2011), 글로벌 문화다양성의 재현 의미: 유네스코 협약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국제사회문화연구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201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적용문제 연구. 〈EU연구〉 제40호, 157~183.
- 서윤호(2010),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분석,〈일감법학〉제23호, 283~321.
- 서현제(2008), 문화다양성협약,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 술연구원 학술대회, 19~33
- 스크린쿼터문화연대(2011), 문화다양성 정책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자료.
- 심규선(2018), 다문화 사회통합에서 상호접촉의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심규선, 이민하, 이윤석(2018),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발전 방안 연구, 〈다 문화콘텐츠연구〉 27, 7~47.
- 오장근(2016),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고 문화 융합에서 문화 브리콜라주(Bricolage)로의 전환-,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육(구 문화교류연구)〉, 제5권 제3호, 63~79.
- 이산호(2010), 문화다양성협약의 발전 과정에서 비정부 기구의 역할과 한계, 〈한국프랑스학논집〉 72권, 505~522.
- 이호용(2018), 문화다양성과 인권 갈등 그리고 국가의 역할. 〈한양법학〉 제29권 제1호, 59~77.
- 임현묵(2011). 문화다양성의 정치 연구-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그 비판을 중심으로, 서 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의선(2016), 개념의 해석적 고찰, 〈글로벌교육연구〉 제8집 4호, 99~127.
- 장의선(2016), 국내외 주요 제도권 문서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적 고찰, 〈글로벌교육연구〉제8집 4호, 99~127.
- 장인호(20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제25집 제1호, 121~162.
- 전광희(2017), 대전광역시 최근 인구변동과 변동요인의 특징,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2 호, 41~58.
- 정혜윤, 김현(2016), 국제레짐으로서 문화다양성협약 창출과정의 이론적 분석, 〈OUGHTOPIA〉제31권 제1호, 97~128.
- 채경진, 임학순(2014). 문화다양성 정책의 수혜자 만족과 인식변화. 문화정책 제1권, 183~200
- 최미세, 곽정연(201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나타난 다양성 확대와 소수성 보호, 〈독일문학〉87권, 137~159.
- 최지수(2020), 한국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 정책- 해외사례를 통한 연구, 한국예술종 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과 예술경영 전공 예술전문사학위논문.
- 한건수(2015),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제10권 제2호, 163~199.
- 한상헌 (2016),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 3 : 정체성 인식에 관한 지역별 사례조사, 대전세종연구워 보고서.
- 한회련(2018),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른 주요 국가의 정책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 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강원연구원(2018), 〈강원도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강원연구원 연구보고서.
- 경기연구원(2017), 〈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 고양시정연구원(2018), 〈고양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고양시정 연구보고서.
- 광주광역시(2016),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연구보고서.
- 김해시(2019). 〈김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 김해시 연구보고서.
- 대전문화재단(2019), 〈2019 무지개다리 사업 계획서〉. 대전문화재단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 부 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4), 〈유네스코문화다양성 협약이행국가보고서작성연구〉, 문화체육관광부연구보고서.
- 108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 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무지개다리 사업 제3차 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2차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문화 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9). 〈문화다양성 주간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20). 〈무지개다리 사업설명회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0), 〈제13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위원회 출장보고.
- 부산광역시(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부산광역 시 연구보고서.
- 서울연구원(2017),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 수원시(2018), 〈수원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수원시 연구보고서.
- 인천발전연구워(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인천연구워 기획과제.
- 인천연구원(2018), 〈인천문화다양성 자원과 활용방안〉, 인천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위원국 역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간 자료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일반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시범연수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간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과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2017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문화다양성 정책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2018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문화다양성 정책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문화다양성 정책연구
- 한국법제연구원(2012),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 연구〉, 현안분석 보고서.
-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2019), 〈대전·세종·충남지역 인구 유출입 현황 및 특징〉,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조사자료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대전광역시청(2019). 2019 대전 사회조사 결과

#### 표·그림 출처

- 표 3-6: 2015~2018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2016~2019)
- 표 3-7 : 2018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2015~2018)
- 표 4-1 : 2019년 대전광역시 : KOSIS 국가통계포털
- 표 4-2 : 2019년 대전의 사회지표 (2019)
- 표 4-3 : 2019년 대전의 사회지표 (2019)
- 표 4-4: 2015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2016)
- 표 4-5 : 2016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2017)
- 표 4-6: 2017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2018)
- 표 4-7 : 2018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2019)
- 그림 3-1 : 세계타임즈(2017.11.13)
- 그림 3-2 : 노원구청홈페이지(2017)
- 그림 3-3 :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2017)
- 그림 3-4 : 부산광역시청(2016)
- 그림 3-5 : 천지일보(2016.11.07)
- 그림 3-6: 광주광역시 5.18민주기록관 (2016)
- 그림 3-7 : 인천광역시(2017)
- 그림 3-8: Yahoo japan news(2020.08.31)
- 그림 3-9: nippon.com(2019.04.01)
- 그림 4-1 : 대전광역시청 페이스북(2019)
- 그림 5-1 : 사이버한국외대학보 미네르바
- 그림 5-2 :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식블로그

DSI

# 문화다양성 관련 법규

- 1) 국내 차별금지 관련 주요 법안 제안 내용
- 2)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조례
- 3) 문화다양성 관련 주요 법규

부록

# 1) 국내 차별금지 관련 주요 법안 제안 내용

## (1)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안(초안)

#### ① 제안배경과 목적

○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② 주요내용

- 차별의 금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 ·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간접차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 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 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함.
-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 : 모집·채용, 임금·금품 지급,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불이익 처분, 금융서비스 공급·이용, 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 의료서비스 공급·이용, 문화 등의 공급·이용, 교육기회, 교육내용 등에서의 차별 유형을 적시.
-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 :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 O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 ③ 특징과 기대효과

-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함으로써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할 수 있 게 하는 한편, 간접차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 조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구제 효과를 높임.
-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 국헌법」상 평등이념의 사회 전반적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차별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차별예방을 위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차별 관련 구제절차가 활성화되고,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외에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적절한 차별시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가 가능해짐.
- 차별행위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여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 2008년 노회찬 의원 등 10인 발의안

#### ① 제안배경과 목적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② 주요내용

- 차별의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 ·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 조 제1항 제1호)
-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 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 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 :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 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 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등 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 내지 제33조)
-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 :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함(안 제34조 내지 37조)
-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안 제45조)

#### ③ 특징과 기대효과

- 차별에 대한 규정이 세부적이고 명확해짐
-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 구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피해자 보호 증진
-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 (3) 2011년 권영길 의원 등 10인 발의안

O 2011년 12월 02일 제안, 2012년 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 ① 제안배경과 목적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② 주요내용

○ 차별의 금지 :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 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 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 터 제8조까지).
-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 :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 시설·의료 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 내 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 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33조까지).
-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0조).

#### ③ 특징과 기대효과

- O 차별에 대한 규정 범주를 확장시킴
-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금지함
-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4) 2012년 김재연 의원 등 10인 발의안

O 2012년 11월 6일 제안, 2016년경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 ① 제안배경과 목적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② 주요내용

- 차별의 금지 :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 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

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 :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의료서비스, 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33조까지).
-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 :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0조).

#### ③ 특징과 기대효과

- 결과적으로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차별로 인정함
-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 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함
-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금지함
- O 고용과 관련한 차별행위에 엄격성을 가짐
-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O 피해자 구제, 보호에 대한 조치 강화
-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 (5) 2013년 김한길 의원 등 51명 발의안

○ 2013년 2월 12일 제안, 2014년 4월 24일 철회.

#### ① 제안배경과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 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② 주요내용

- 차별의 금지 :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거 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아 금지하고, 직접차별 외에 간접 차별,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 또한 차별로 보아 금지함(안 제3조제1항).
-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 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 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 :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 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 함(안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 : 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도모함(안제31조부터 34조까지).
-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40조).

#### ③ 특징과 기대효과

- 차별피해 사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항 추가
-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 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
-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 (6) 2013년 최원식 의원 등 15명 발의안

O 2013년 2월 20일 제안, 4월 24일 철회.

#### ① 제안배경과 목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용모·지역·학력·혼인상태·종교·정치적 성향·가치관 등을 이유

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 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 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 ② 주요내용

- 차별의 금지 : 성별·학력·지역·인종·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
-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입학·편입·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고용에 있어서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근로조건·교육·부서배 치·승진·임금·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 조까지).
- 재화·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상업시설 ·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 27조부터 제32조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 :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 43조).

#### ③ 특징과 기대효과

- O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분야 및 영역에 대한 언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언론인·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함(안 제6조).

# 2)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성칠의원 대표발의)

의 안 선 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5 .

발 의 자: 조성칠·박혜련·민태권

홍종원 남진근 윤종명

권중순·김찬술·오광영

채계순정기현·김인식

우승호·구본환의원(14명)

####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 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시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 예정

다. 소관부서 : 문화예술정책과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 : 예정

\_\_\_\_\_\_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실태조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시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3.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매년 실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 2.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상황 평가
  - 3.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
  -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3.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사업)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조사
  - 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 활동 발굴 및 보급
  - 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4.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 5.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문화다양성 관련 법규

## (1)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2005년 10월 20일, 파리

2005년 10월 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제33차 총회는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간직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으며,

문화다양성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므로, 공동체, 민족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 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그 밖의 보편적으로 승인된 문서에서 선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기리고, 또한, 빈곤퇴치에 역점을 둔 「국제연합새천년선언(2000)」을 고려하여,

국제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국제 개발정책에 있어 전략적인 요소로서 문화를 통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무·유형적 부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특히, 소멸이나 심각한 훼손 가능성으로 문화적 표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문화 콘텐트를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과, 특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문화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문화다양성이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강화되고 문화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육성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 안에서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매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를 재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남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 하고,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임을 상기하고, 문화적 표현의 보호 와 증진에 있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재확인하며,

전통적 문화 표현을 창조, 보급 및 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활용하여 그들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그들의 자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수자와 토착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화 생명력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문화적 표현을 육성하고 새롭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 진보를 목적으로 문화 개발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는 문화적 상호작용과 창의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적 창조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 요성을 인정하며.

정체성, 가치 및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 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아니하여야 함을 확인하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개발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말과 영상에 의한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의 특정 임무를 인식하며,

문화다양성 및 문화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네스코가 채택한 국제문서의 규정, 특히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의 규정들을 참고하여, 2005년 10월 20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 132 /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진단과 현안 과제 도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